

2022. 7.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 해당 내용은 '22.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보완중이므로 추후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제도 소개

1 고용보험 적용 대상

1. 적용 직종	3
2. 적용 요건	7
2-1. 연령 기준	7
2-2. 소득 기준	8
2-3. 소득합산 제도('22.1.1. 시행)	9

2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1. 보험사무관리 주체	11
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13
2-1.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13
2-2. 이용사업개시·종료신고(플랫폼종사자)	14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16
3-1. 일반노무제공자	16
3-2. 단기노무제공자	20
3-3. 노무제공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20
3-4.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	21
4.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시기	22
4-1. 일반노무제공자	22
4-2. 단기노무제공자	24
4-3.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	25
5. 피보험자격 이종취득	26
6.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자료 수집·관리	28

3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1. 고용보험료 산정	30
1-1. 고용보험료율	30
1-2. 보수액	31
1-3. 월보험료 산정액	36
2.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	37
3.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	39

4 구직급여

1. 수급요건	41
1-1. 일반노무제공자	41
1-2. 단기노무제공자	47
2. 대기기간	49
3. 지급수준	50

5 출산전후급여

1. 수급요건	53
2.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55

6 관련 지원제도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57
2.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64
3.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	66

1 고용보험 적용(일반)

1. 일반·단기노무제공자 공통 사항..... 71

1-1. 고용보험 적용 직종..... 71

- '21.7.1.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무엇인지
- '22.1.1.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무엇인지
- '22.7.1. 고용보험 적용 직종은 무엇인지

1-2. 고용보험 적용 요건..... 73

- 만 65세 이후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 상실 시 고용보험 재취득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지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지
- 타인의 명의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지
-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지

2. 일반노무제공자..... 75

2-1. 일반노무제공계약의 기준..... 75

- 일반노무제공과 단기노무제공의 차이는 무엇인지

2-2. 고용보험 적용 요건(소득)..... 75

- 고용보험 적용기준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2-3.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76

- 소득합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일반노무제공계약과 단기노무제공계약 간 소득합산이 가능한지
-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합산이 가능한지

3. 단기노무제공자..... 77

- 부업이나 알바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 사업주 없이 플랫폼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주의 콜이 아닌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 사업주의 콜과 사업주가 아닌 사업의 콜(단기콜 등)을 같이 수행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4. 플랫폼 호출(콜)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78

- 제휴콜(위탁콜 등)의 경우 고용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가짜콜, 문제콜(취소콜), 테스트콜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 콜을 수행하던 도중 자정이 지난 경우 고용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2 고용보험 관계

1. 일반노무제공자..... 79
 - 1-1. 피보험자격 취득시기..... 79
 - 시행일 이전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경우
 -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재취득한 경우
 - 소득합산 신청을 한 경우
 - 1-2. 피보험자격 상실시기..... 80
 -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되는 달에 월보수액도 80만원 미만인 경우
 -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경우
 - 소득합산 신청을 한 경우
2. 단기노무제공자..... 82
 - 단기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3.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83
 - 근로자로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자신의 이중취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징수

1. 고용보험료율..... 85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2. 부과기준소득(월평균보수/월보수액)..... 86
 - 2-1. 월평균보수/월보수액 산정..... 86
 - 월평균보수와 월보수액이 같은 개념인지
 - 고용보험 적용기준인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월보수액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마일리지 등 콜 수수료 외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월보수액 산정 시 포함되는지
 - 2-2. 기준보수 적용..... 88
 - 기준보수란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준보수가 적용될 수 있는지
 - 소득합산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준보수가 적용되는지
 - 알바 또는 부업의 경우에도 기준보수가 적용되는지
 - 2-3.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 90
 -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를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2-4. 보수총액신고	91
•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한 경우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지	
•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를 따로 두는 직종의 경우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지	
3. 고용보험료 부과	92
3-1. 고용보험료 산정	92
• 복수의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 고용보험료의 상한 또는 하한이 있는지	
3-2.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	93
• 플랫폼 종사자의 보험료 납부 및 부과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4. 고용보험료 지원	94
•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플랫폼사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구직급여

1. 수급요건	95
1-1. 피보험 단위기간	95
•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연속하여 가입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기간도 산입할 수 있는지	
• 동일기간 이중취득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동일기간 이중취득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1-2. 이직사유	98
• 플랫폼의 경우 강제 해고가 불가능한데, 비자발적 이직이 가능한지	
•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 소득감소 비교대상이 되는 계약은 이직 당시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이어야 하는지	
•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가 무엇인지	
1-3. 기타 수급요건	101
• 만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2. 구직급여 지급	102
2-1. 지급수준 및 기간	102
• 구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구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지급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2-2. 대기기간	103
•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5 출산전후급여

1. 수급요건..... 104
 -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2. 출산전후급여 지급..... 104
 - 출산전후급여 지급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3. 육아휴직급여..... 105
 - 노무제공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 계획이 있는지

6 고용보험사무 관리(고용보험 신고 등)

1. 고용보험 신고..... 106
 - 1-1. 고용보험관계 관련..... 106
 -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 우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별도의 서면계약 없이 전산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 1-2. 피보험자격 관리 관련..... 107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등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노무제공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 취득·상실신고도 반복해서 하여야 하는지
2.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109
 - 2-1. 원천공제..... 109
 - 플랫폼이 어떻게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로부터 원천공제 해야 하는지
 - 원천공제한 금액에 대해 관리 규정 등이 있는지
 - 예치금이 0원이 되는 등 원천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마일리지 등 콜 수수료 외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원천공제 대상인지
 - 2-2. 보험료 정산..... 110
 - 원천공제 이후 피보험자격 정정·변경 등으로 보험료 정산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전산 구축 및 관리..... 111
 - 3-1. 전산 구축..... 111
 -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전산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 대규모 전산 구축이 어려운데 영세 플랫폼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3-2. 자료의 관리..... 112
 - 플랫폼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는지

4. 보험사무 지원 113

- 고용보험 신고 등을 위한 인건비, 전산 구축비 등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 보험사무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7 과태료

- 일부 플랫폼 사업자만 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노무제공플랫폼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노무제공플랫폼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8 기 타

- 고용보험 가입 시 다른 정부 기관 등에 소득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지
- 노무제공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참고자료

1 신고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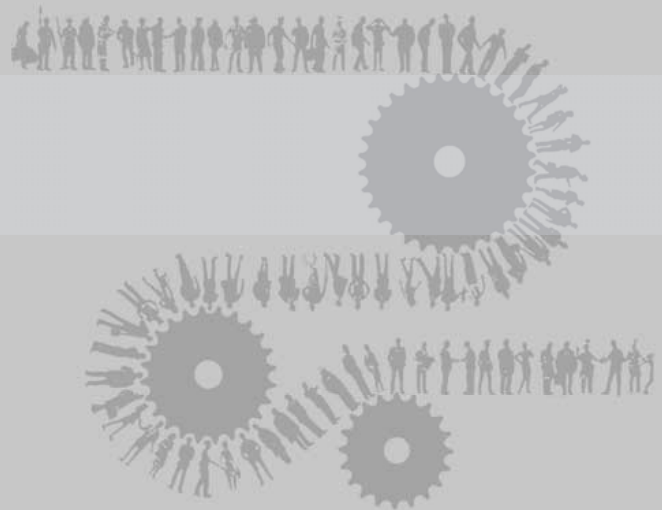
1)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119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120
3)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122
4)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124
5)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126
6)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	128
7)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129
8)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132
9)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134
10)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136
11)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138
12) 피보험자격 신고서	140
13) 월평균보수 통보서	142
14)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143
15)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145
16)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서	147

2 참고 자료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과·납부 세부절차	149
2) 매월 보험료 확인 방법(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자)	150
3)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인포그래픽('21.7.~)	151
4)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인포그래픽('22.1.~)	152
5) 특고 고용보험 적용 인포그래픽('22.7.~)	153
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154

Part 1.

제도 소개



1. 적용 직종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 다양한 고용형태의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근로자 중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넓힘

* 노무제공플랫폼(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21.7월부터 적용)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1호 가~다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 ('22.1월부터 적용)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 ('22.7월부터 적용)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1호 라~차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유통배송기사)

①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호)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2호)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③ **택배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3호)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④ **대출모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4호)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5호)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⑥ **방문판매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6호)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⑦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7호)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⑧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8호)

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⑨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9호)

9.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적용대상)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과정 강사

* 단,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⑩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0호)

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⑪ **화물차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1호)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택배 지·간선기사〉

- 라.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대)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특정품목운송차주〉

-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유통배송기사〉

-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⑫ **퀵서비스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2호)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택배기사)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화물차주)

* 음식물 등 배달대행업체 포함

⑬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3호)

13.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⑭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4호)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⑮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5호)

15.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⑯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6호)

16.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⑰ **골프장 캐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7호)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 적용 요건

- ◆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제공계약(1개월 이상)***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 단,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

2-1. 연령 기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원칙

-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적용

□ 예외

- ① 65세 전부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인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 적용**

* 특고 12개 직종의 경우 '21.7.1,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의 경우 '22.1.1.

- ②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제공 계약의 단절 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유지되는 한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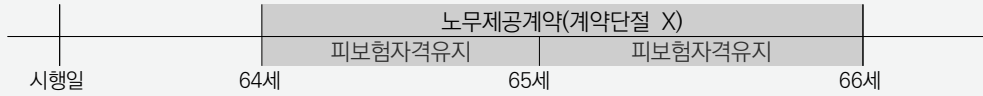
* 65세 이후에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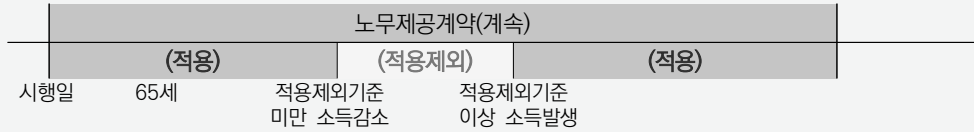
- 시행일 이후 65세 이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적용제외**



-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 → 피보험자격 유지(계약단절 없을 경우)



- 시행일 기준 65세 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후 65세 초과, 적용제외기준 미만으로 소득 감소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후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하는 경우 → 재취득(적용대상)



2-2. 소득 기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

□ 원칙

- 노무제공계약(1개월 이상)에 따른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에 한하여 적용

* 특정 노무제공월에 노무제공계약 대가로 발생하는 금액(31쪽 참고)

□ 예외

-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단기 노무제공자)에는 소득에 무관하게 적용

일반노무제공자 vs. 단기노무제공자

- “일반노무제공자”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예: 사전 계약이나 약관을 통해 플랫폼에 등록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등) →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 “단기노무제공자”란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예: 공유콜을 수행하는 킥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적용

2-3. 소득합산 제도 ('22.1.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노무제공자가 영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라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요건

-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중복된 노무제공기간 중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본인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 ① **노무제공자가 신청하는 대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특정 노무제공계약에 대해 합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합산이 가능한 경우라도 합산대상에서 제외**

* 예시

- A 사업장 1월 월보수액 40만원, B 사업장 1월 월보수액 50만원인 경우 중복기간(1.1.~1.31.) 중 합산 월보수액은 90만원인 경우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A, B 사업장에서 각각 적용
- 이 경우 C 사업장에서 1월 월보수액 1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자가 C 사업장에 대해 합산 신청하지 않는다면 C 사업장은 제외

- ② **소득기준을 충족(월 보수액 80만원 이상)하는 노무제공계약과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음***

* 소득기준을 충족(월 보수액 80만원 이상)하는 노무제공계약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기 때문

* 예시

- A 사업장 1월 월보수액 100만원, B 사업장 1월 월보수액 20만원인 경우 중복기간(1.1.~1.31.) 중 합산 월보수액 120만원
⇒ A 사업장은 당연적용, B 사업장은 신청하더라도 미적용

- ③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도중 하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될 경우,
 - 소득합산은 종료되고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 ④ 단기노무제공계약의 경우는 소득에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80만원 미만 일반노무제공계약과는 합산 신청이 불가

□ 대상

- 노무제공자 직종 구분 없이 월보수액 합산신청 가능
 -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 정해져 있는 건설기계조종사와 화물차주(단 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캐디(34쪽 참고)는 신청대상 직종에서 제외
 - 노무제공계약이 아닌 근로자(근로계약) 혹은 예술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합산신청 불가
 - * 다만, 타 사업장에서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라도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 월보수액 합산 신청 가능
 - ** 예술인의 경우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계약 합산 신청 가능

□ 합산 시점

- 고용보험 적용 원칙에 따라 소득 귀속월(발생월) 기준으로 합산 및 고용보험 적용
 - * 다만, 보험설계사 등 소득 귀속월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보수가 여러 월에 걸쳐 지급되는 등 특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소득 지급월 기준으로 합산

□ 합산 신청

- 해당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자 본인이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3)' 제출
 - * 근복공단은 소득 기준 충족 확인 후 해당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
- 전월 보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은 매월 초일 부터 신청 가능

1. 보험사무관리 주체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④ 제1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하는 노무제공자와 그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 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칙

-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동일하게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납부 등 보험사무 이행의 주체**

- 다만, **국·공립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업주(해당 부처의 장, 해당 교육감)가 보험사무관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각급 학교에서 보험사무 수행**

* 다만,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경우 국·공립학교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라도 사업주(해당 부처의 장, 해당 교육감)가 신고해야 함

□ **특례**

○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플랫폼 이용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보험사무 이행의 주체

* 단, 고용보험료 부담 의무는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에게 있으며, 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의무만 이행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보험사무 주체〉

	노무제공자 (‘21.7.1. 적용 12개 직종)	플랫폼종사자 (‘22.1.1. 적용 2개 직종)
보험가입자	노무제공계약 체결 당사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 포함))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보험료 납부 의무자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2.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2-1.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⑥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 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 종사 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각호 생략)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신청한 날에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 ⑥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을 신고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또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보험관계 성립·소멸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 체결 등으로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 필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신고 필요(별지 제4호의2 서식)

- 한편,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개시 신고(이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를 한 경우(15쪽 참고)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

□ 과태료

-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2-2. 이용사업개시·종료신고(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같은 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3.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8(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8조의4 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사업자등록번호
3. 노무제공자의 직종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20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와 별지 제22호의21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22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2조의2에 따라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 이용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사무 의무를 지게 된 경우 이용계약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①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0서식) 및 ②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신고**(별지 제22호의21서식)를 해야 함
 - 플랫폼사업자가 **이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14쪽 참고)
- 플랫폼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신고**(별지 제22호의22서식)를 해야 함
 - * 다만,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소멸신고**를 하여야 함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3-1.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① 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노무제공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계약 기간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를 통보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12제1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고용·노무 등의 개시·종료 신고) ① 영 제19조의7제3항·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의 종료,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이나 종료를 신고하려는 사업주**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2.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별지 제22호의14서식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또는 별지 제22호의15서식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이 적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또는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5 서식)'를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월 80만원 이상인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신고 이후, 사업주 또는 플랫폼 사업자가 매월 월보수액 통보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노무제공자의 소득변동에 따라 피보험자격 신고를 반복해야 하는 사업주 또는 플랫폼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변동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처리

□ 과태료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시행령 제146조 및 별표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0조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22.1.1.부터 고용보험 적용된 2개 직종 및 '22.7.1.부터 고용보험 적용된 5개 직종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상실 등)에 대한 지연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중(~'22.12.31. 필요시 연장 검토 예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액(고보법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제15조(제77조의10제1항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에 따른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거짓으로 피보험자격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합산액 최대 1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합산액 최대 200만원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합산액 최대 300만원

□ 변경·정정신고 및 확인청구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및 확인의 청구 등)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정정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①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정정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 **(변경·정정신고)**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정정되었을 때에는
 - 변경일이나 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신고
- **(확인청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노무제공자는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을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

*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확인청구는 ①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되거나, ②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하거나, ③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

3-2.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자격에 대한 신고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확인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단기노무제공자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신고 등) ② 영 제104조의12제3항 및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 취득·상실 신고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를
 -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수행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과태료, 변경신고 및 확인청구

- 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3-3. 노무제공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④ 노무제공자는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③ 영 제104조의12제4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보험자격 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가능

*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노무제공계약 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

(예시: 각종 위·수탁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플랫폼 기반의 노무제공자) 계약 관련 App 출력 자료 등)

3-4.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취득 신고

○ 노무제공자 본인이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제6호의3)'을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 합이 8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된 것으로 봄

* 최초 신청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도 계속하여 피보험자격 유지

4.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시기

4-1.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사업 폐업 등)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피보험자격의 취득 시기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 다만, 직종별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된 날짜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월보수액 80만원 이상)하고 있던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시행된 날짜에 피보험자격 취득

* 예: '22.7.1.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유지(월보수액 80만원 이상)하고 있던 골프장캐디의 경우, 동 직종에 대해서는 '22.7.1.에 고용보험이 시행되었으므로 '22.7.1.에 피보험자격 취득

- 피보험자격 취득 후 노무제공계약에는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 (월보수액 80만원 미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 이후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며, 그 취득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해당 월의 초일'임

□ 피보험자격의 상실 시기

-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 종료로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상실 신고를 한 경우 노무제공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 따라서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 상실
 -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초일에 피보험자격 상실

* 예시

- 플랫폼 기반 종사자가 '22.1.1.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고 매월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22.2.15.
 - ☞ 피보험자격 취득일: 고용보험 시행일인 '22.1.1.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22.2.1.~4.30.이고 2월 보수액이 70만원, 3월 보수액이 100만원, 4월 보수액이 90만원인 경우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22.4.15.
 - ☞ 월보수액 신고: (3월분) ~'22.4.30. (4월분) ~'22.5.31.
 - ☞ 피보험자격 취득일: '22.3.1. (2월은 80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 3월은 80만원 이상이므로 80만원 이상이 발생한 3.1.에 피보험자격 취득)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22.5.15.
 - ☞ 피보험자격 상실일: '22.5.1. (계약종료일인 4.30. 다음날)
- 노무제공계약기간이 '22.3.1.~6.20.이고 3월 보수액이 100만원, 4월 보수액이 40만원, 5월 보수액이 80만원, 6월 보수액이 60만원인 경우
 -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22.4.15.
 - ☞ 월보수액 신고: (3월분) ~'22.4.30. (4월분) ~'22.5.31. (5월분) ~'22.6.30. (6월분) ~'22.7.31.

* 4월 및 6월의 월보수액은 80만원 미만이므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상실신고를 해야 하나,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액을 통보할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 처리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22.3.1. 취득하고 4.1.자로 상실된 후, 5.1.자로 재취득했다가 6.1.자로 상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22.7.15.

* 노무제공계약기간 내 소득변동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는 공단에서 직권 취득·상실 처리를 하나, 계약 종료에 따른 상실의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해야함

4-2.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⑥ 법 제77조의8 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 피보험자격의 취득 시기

- 노무를 제공한 날(노무제공일)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취득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 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47쪽 참고)

* 22일 = (주당 노무제공일수 5일) × (연간 주수 52주) ÷ 12개월

□ 일(日) 산정기준

-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한 '일(日)' 은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
 - 상기 일(日) 산정기준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수락하여 사실상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신고

* (예시) 노무제공자 A가 1.15. 오후 11:30에 노무제공을 시작하여 1.16. 오전 00:30에 노무제공을 완료한 경우 → 1.15. 기준으로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4-3.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

○ 노무제공자에게 유리한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종료)일을 취득(이직)일로 함

* 계약건별 개시(종료)일이 다르더라도, 개시(종료)일에 따른 소득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월단위 소득 기준으로 합산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는지 판단

- (취득일)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제공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
- (상실일)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월의 노무제공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의 다음날

* 예시

■ (예시 1) 노무제공자가 22.3.5.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계약기간	1월	2월	...	4월	5월	6월
A	'22.1.12~ '22.5.11.	1.12. <60만원>	2월 <60만원>	...		5.11. <60만원>	
B	'22.2.10~ '22.6.7.		2.10. <30만원>	...		5월 <30만원>	6.7. <30만원>

- ① 피보험자격 취득일: 노무제공자는 2.1.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2.1. ▲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2.10.
- ② 피보험자격 상실일: 노무제공자는 6.1.부터 피보험자격 상실
 ▲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5.12. ▲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6.1.

■ (예시 2) 노무제공자가 2.10.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사업장	1월	2월	3월	...	10월	11월
A	1.10. <50만원>				10.10. <40만원>	
B	1.15. <40만원>				<60만원> 10.20.	

- ① 피보험자격 취득일: 노무제공자는 1.10.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1.10. ▲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취득일 1.15.
- ② 피보험자격 상실일: 노무제공자는 10.21.부터 피보험자격 상실
 ▲ A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10.11. ▲ B 사업장 기준 피보험자격 상실일 10.21.

5.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허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③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 근로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 〉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노무제공자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과 동시에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단,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과 동시에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제한됨*

*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근로자로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근로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금지)

↳ (주된사업장)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의 관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② 법 제2조제1호가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나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나목(자영업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나, 자영업자로서는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취득 또는 유지 가능

이중취득의 효과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시 보수총액이 커짐에 따라 기초일액*도 증가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그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보험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⑤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해당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노무제공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3(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등)

④ 법 제77조의7제2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업장의 명칭·주소
2.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이름
3. 사업주의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⑤ 법 제77조의7제2항제3호에서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자의 이름·직종
2. 노무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3.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4.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5.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고용보험법 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정보·자료의 제공 범위

- 플랫폼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경우 ①플랫폼이용계약 개시일·종료일, ②사업장 관련 정보*, ③노무제공자에 관한 자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장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노무제공자 이름·직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일수,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

□ 정보·자료의 보관

-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사업장 관련 정보, 노무제공계약 관련 자료 등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함

□ 과태료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자료 또는 정보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액(고보법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50만원	50만원

1. 고용보험료 산정

1-1. 고용보험료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율은 1.6%이며,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8%씩 균등 부담
 - 근로자(1.8%, 사업주·근로자 각 0.9%)와 달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만 적용함(고용안정, 직능개발사업 미적용)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보험료만 부담하기 때문

1-2. 보수액

□ 보수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③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제5호), 경비 등을 제외하여 산정**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예시)〉

-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제2호) :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

- 보수액에서 제외되는 「**경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 경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5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율〉

- 보험설계사 25.0% ■ 학습지강사,방문강사 22.0% ■ 택배기사 18.2%
- 대출모집인 23.5%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23.5% ■ 방문판매원 22.0%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22.0%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24.2%
- 방과후학교강사 23.5% ■ 쿠퍼비스기사 27.4% ■ 대리운전기사 24.1%
- 화물차주 30.3% ■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15.7%
- 관광통역안내사 25.6%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9.3%

□ 월평균보수/월보수액*

* (참고) '22.7월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상 매월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칭하고 있으나, '22.6.10. **법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법령 상의 용어인 '**월 보수액**'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음('23.1.1. 시행 예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사목부터 차목까지 및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중 유통배송기사, 쿠팡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중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및 택배자·간선기사 및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제외))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前月)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 및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이 영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와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 통보) 영 제19조의3 제5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2호의12서식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다만,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②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11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같은 항 제17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말한다.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중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및 택배자·간선기사 및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 참고: '22.6.10. 개정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3.1.1. 시행예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②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노무제공자의 월별 보험료(고용보험료에 한정한다)는 월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 보수액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내용, 월 보수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한 보수**

* (예시) '22.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2월에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경우, 1월의 월별 고용보험료는 3월에 산정되어 4.10.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

- 플랫폼종사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다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등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계약의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의 계약에서 발생한 보수액을 합산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

* (예시) 플랫폼종사자 '甲'과 사업주 '乙'이 플랫폼 A, B, C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플랫폼에서 계약한 보수액을 합산하여 월평균보수를 산정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12서식)'를 제출*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로 대체, 20쪽 참고),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단 유통배송기사 제외), 골프장캐디(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액을 별도로 고시)의 경우 제출 제외

** (참고) '21.7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형 특고(보험설계사, 방문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의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토록 변경(예: 7월 소득 지급 시 8월 말일까지 신고)

- 다만,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함
 - 수 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직종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건설기계조종사(2,479,444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4,310,000원 / 택배 지·간선기사 3,150,000원 / 특정품목 운송차주 4,830,000원), 골프장 캐디(2,699,994원) 직종 해당
- *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 기준보수(월보수액 하한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② 기준보수는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간·일 또는 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② 법 제3조제2항(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준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월단위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133만원**으로 설정

*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호)

-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 (예시) 월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월단위 기준보수(133만원)보다 월보수액이 적으므로 기준보수 기준(133만원)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

- 다만,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8쪽 참고),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9~10쪽 참고), 소득 확정이 어려워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고시하는 직종의 경우(34쪽 참고,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 품목운송차주), 골프장캐디)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음**

1-3. 월보험료 산정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 보험료”)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④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통보한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율(1.6%,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8% 부담)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을 월평균보수로 함

-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10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월별) 441,150원, (연간) 5,293,800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0호))

- 고용보험료의 하한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준보수(133만원) 기준으로 부과된 고용보험료***가 사실상 하한액

* $133\text{만원} \times 1.4\% = 18,620\text{원}$ (사업주, 노무제공자 각각 9,310원)

↳ 단, '22.7.1.부터 $133\text{만원} \times 1.6\% = 21,280\text{원}$ (사업주, 노무제공자 각각 10,640원)

-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35쪽 참고) 하한액이 없으며, 실제 얻은 노무제공대가(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2.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⑥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무제공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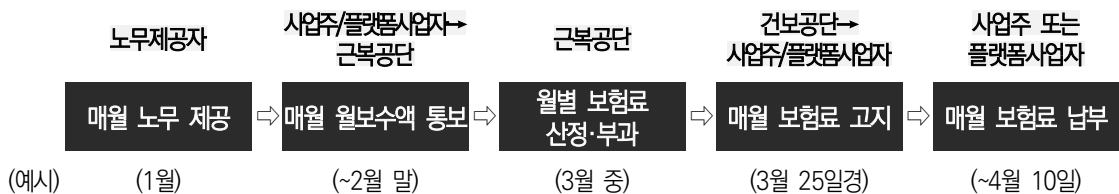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③ 제48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부담분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그 달의 월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고용보험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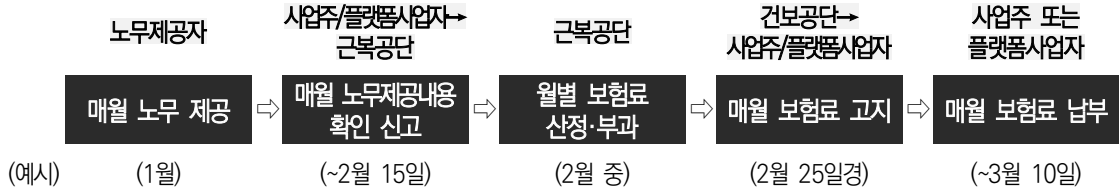
- **(일반노무제공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통보(신고)
 - 공단은 통보된 월보수액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다음 달 중순까지 보험료 산정, 부과(약 25일 경 고지서 발송)

<일반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 절차>



- **(단기노무제공자)**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0쪽 참고)'를 제출
 - 공단은 신고된 노무제공대가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보험료 산정, 부과

〈단기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과 절차〉



보험료 부과 고지 방법

- 보험료는 사업장당 매월 부과·납부해야 하는 노무제공자 **총 인원수** 및 **총 보험료** (1.4%, 사업주·노무제공자 각 0.7%)로 부과·고지
-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무제공자**가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확인을 원할 경우 '고용산재도탈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150쪽 참고)

□ 고용보험료 납부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사업주가 노무 제공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 다만,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가 아닌 경우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플랫폼사업자가 원천공제하여 매월 납부

3.

소득합산 신청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무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월보수액 산정

- (월보수액)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특정 사업주와의 계약건별 월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됨
- (월보수액 산정 기준) 소득합산을 신청한 첫 달은 합산신청에 따른 조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근거) 결과에 따라 월보수액을 산정

* 소득합산 신청 결과를 신청 노무제공자 및 해당 사업장에 반드시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월보수액을 해당 사업장의 월보수액 통보로 같음

- 그 다음 달부터는 일반적인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산정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주들은 공단에 월보수액을 통보해야 하며, 공단은 통보된 보수액을 합산하여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산정

* 합산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은 종료되며, 공단은 이 사실을 해당 사업주들에게 통보 → 따라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달의 그 다음달부터는 각 사업장이 월보수액 통보 불요

□ 고용보험료 부과

-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에 대해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에서 통보한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월별 보험료 부과
- 다만, 합산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보수(월 133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고용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사업에서 법정통보기간 내 월보수액을 통보할 경우 지원

* 다만, 소득합산을 신청한 첫 달은 합산신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월보수액 통보를 직권으로 처리하므로, 사업에서 월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월보수액 통보서가 재접수(정정)되어, 합산 월보수액이 두루누리 지원 보수기준 이상이 되거나 8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취득취소 처리될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 지원금 전액 환수

1. 수급요건

1-1. 일반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②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8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피보험 단위기간

- (수급요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필요

- **다수 고용형태에서** 종사한 사람이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로서 최소 피보험자격 3개월**(이직 전 24개월 중) 필요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각 고용형태별로 종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산정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둘 이상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다음 산식*을 충족하면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

*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9개월, 근로자로 90일(유급일) 종사하였을 경우
 → (좌변) $1 - (9\text{개월} \div 12\text{개월}) = 0.25$ / (우변) $90\text{일} \div 180\text{일} = 0.5$
 위 산식에 따라 $0.25 \leq 0.5$ 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4개월, 근로자로 120일(유급일), 예술인으로 4개월 종사하였을 경우
 → (좌변) $1 - (4\text{개월} \div 12\text{개월}) = 0.67$ / (우변) $(120\text{일} \div 180\text{일}) + (4\text{개월} \div 9\text{개월}) = 0.67 + 0.44$
 위 산식에 따라 $0.67 \leq 0.67+0.44$ 이므로 기여요건 충족

○ **(산정방식)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피보험자격 유형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고용형태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식에 따라 포함됨

- * i) 근로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
- ii) 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 예술인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
- iii)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

-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다른 유형(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함께 있는 기간은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예시**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6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산정
- 이직 전 24개월간 노무제공자로 6개월,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으로 동시에 3개월, 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5개월 피보험자 가입된 경우 → 노무제공자 피보험 단위기간 14개월 산정

-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 신청 시, 다른 유형(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예시**

-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156일(6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우변의 값이 예술인은 0.67, 근로자는 0.87로 산정됨
→ 근로자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근로자인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으로 아래 산식을 산정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이직사유

-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발적 이직 등 아래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22.4월 현재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다른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4항 및 별표 2의3(아래) 신설을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규정 마련('22.7월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제101조제4항 관련) 〉 ('22.7월 시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노무제공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할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 나.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
2.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또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또는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4. 노무제공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의 중단·폐지·해지·종료 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계약해지를 권고 받은 경우
 -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계약조건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의 이동 등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계약 당시와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의 노무제공장소의 변경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장소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기업의 사정상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계약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게 된 경우
 12. 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노무제공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노무제공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에 따른 아래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 기준’에 해당 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예) ▲노무제공자가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했다는 사업주 진술이 있는 경우, ▲대리기사가 의도적으로 콜을 거부했다는 사업주 진술이 있는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중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월 소득이 0원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의도적인 소득감소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 아래 기준 <1> 또는 <2-①, 2-② 모두 충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
- <2>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 ②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 전년도에 이직당시와 동일한 노무제공계약이 없을 경우, 이직당시 노무제공계약과 유사한 전년도의 노무제공계약(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평균소득 적용

*** 예시**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의 예시

: '23.10월 이직자의 '23.7~9월(직전 3개월) 소득과 '22.7~9월(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의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 '23.7~9월간 소득이 '22.7~9월간 소득보다 **34.5% 감소**하였으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연월	소득	연월	소득
'23.9월	180만원	'22.9월	150만원
'23.8월	100만원	'22.8월	200만원
'23.7월	80만원	'22.7월	200만원
합계	360만원	합계	550만원

- ❶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전년도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보다 적고, ❷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의 예시

: '23.10월 이직자의 '23.7~9월(직전 3개월) 소득과 '22.1~12월 1년간(전년도) 해당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 '22.10~'23.9월(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 ❶ '23.7~9월간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으로 '22.1~12월 월평균 199.2만원보다 낮음

❷ '22.10~'23.9월 동안 '22.1~12월 소득의 월평균 금액(199.2만원)보다 30%(139.4만원) 이상 작은 달이 '22.12월, '23.5,6,7,8,9월로 총 6개월이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연월	소득	연월	소득	연월	소득
'23.9월	100만원	'22.12월	120만원	'23.9월	100만원
'23.8월	110만원	'22.11월	160만원	'23.8월	110만원
'23.7월	120만원	'22.10월	160만원	'23.7월	120만원
3개월 평균	110만원	'22.9월	180만원	'23.6월	125만원
		'22.8월	190만원	'23.5월	130만원
		'22.7월	200만원	'23.4월	180만원
		'22.6월	200만원	'23.3월	190만원
		'22.5월	160만원	'23.2월	200만원
		'22.4월	170만원	'23.1월	200만원
		'22.3월	250만원	'22.12월	120만원
		'22.2월	300만원	'22.11월	160만원
		'22.1월	300만원	'22.10월	160만원
			월평균	199.2만원	30% 이상 작은 달

1-2. 단기노무제공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⑥ 법 제7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 피보험 단위기간

- (수급요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필요(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 (산정방식) 월 기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22일 = (주당 노무제공일수 5일) × (연간주수 52주) ÷ 12개월

* 예시

■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 이직사유

- 일반노무제공자와 동일

□ 단기노무제공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추가 조건

- 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뿐만 아니라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한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②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43~45쪽 참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하였을 것

2.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⑤ 법 제77조의8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주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득 감소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주

- 노무제공자는 실업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 이후에 대기기간 동안의 구직급여일액을 제외하고 **구직급여 지급**
- 단,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는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4주간, 소득감소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2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 이후에 대기기간 동안의 구직급여일액을 제외하고 구직급여 지급

3.

지급수준

□ 지급액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④ 법 제77조의8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 **(기초일액)**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다만, 산정한 금액이 이직 당시의 기준보수(133만원)의 일액(44,333원)*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 일액(44,333원)을 기초일액으로 산정

* 44,333원 = (기준보수 133만원) ÷ 30일

- 또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에 대한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함

* 건설기계조종사 82,648원 / 화물차주 143,666원(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105,000원(택배 자·간선기사), 161,000원(특정품목운송차주) / 골프장캐디 89,999원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56호))

○ **(구직급여일액)**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인 44,333원 미만인 경우 44,333원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므로,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26,600원(=44,333원×60%)

□ 지급중지 또는 감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 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 (구직급여 감액기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노무제공자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중지 또는 감액

- 노무제공자가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아래 항목에 해당), 구직급여 지급중지(전액 감액)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제7항 제1호 각목)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또는 노무제공계약(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급중지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A)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B, 아래 항목에 해당)을 넘는 경우, A-B의 합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5호))

-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1) 구직급여일액의 30%*
 - * 단,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에 따른 금액(14,656원)보다 작은 경우, 14,656원을 적용
 -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 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50조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를 준용하여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적용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1)〉

구 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단,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41쪽 참고), 실질적으로 위 표에서 소정급여일수 120일(피보험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음

1.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 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9제2항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❶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충족 필요

❷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 중 소득활동 허용 기준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2호))

-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총족

③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2.

지급기간 및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인 피보험자”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한다.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104조의9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출산전후급여등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 지급기간

○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단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사산은 임신기간별로 5~90일

출산전후급여 지급기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2항)

1.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월평균보수 산정)** 출산일이 포함된 월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
- **(상·하한액)**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내에서 지급

*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1호)

- **(지급 제외)**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동 금액 제외하고 지급

출산전후급여 지급 제외 항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제4항)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4.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5.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특례) ⑧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등을 규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법 제21조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하는 날(이하 “지원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하 “근로자인 피보험자”라 한다)의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일 것.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일 것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다.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은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수·보수액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나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19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④ 사업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1월 1일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사업으로 본다.

⑤ 사업이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도입배경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노무제공자로 확대('21.7.1.)됨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두루누리사업)** 또한 **저소득 노무제공자로 확대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추진

□ 지원대상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지원요건

- ① **(사업규모)**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노무제공자는 복수의 사업주와 노무제공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로 산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 산정방식

- (기존 성립사업장)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또는)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신규 성립사업장)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② (보수수준) 월별로 지급된 보수가 **230만원 미만**일 것*('22년 기준)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월보수액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③ (지원 제한)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한*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 재산은 전년도 「지방세법」 과세표준액 자료(행안부) 활용, 소득은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전전년도 소득자료(국세청 과세자료) 활용

* ▲ 재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소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른 적용 예시

- 전년도 종합소득자료를 매년 11월에 입수
- 지원 제한 요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① 1~10월: 전전년도 종합소득
 - ② 11~12월: 전년도 종합소득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근거)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8호)

- ① **(지원수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②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
- ③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예시

- 근로자·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시 지원기준 사례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각각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150만원인 경우 ⇨ 근로자 미지원, 노무제공자 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15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 지원, 노무제공자 미지원
 -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월보수는 근로자 300만원, 노무제공자 300만원인 경우 ⇨ 근로자·노무제공자 모두 미지원

□ 지원절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25조(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①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법 제21조(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과 사업주(신청인이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던 사업에 지원 대상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이후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이 있고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지급

① (지원신청)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를 제출

* 단, 사업주가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별지 제2호의2서식)'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표시하여 제출한 경우 지원신청을 한 것으로 봄

- 한편, 사업주가 별도의 플랫폼 이용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플랫폼종사자가 각각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3서식)'을 제출**

② (지원결정)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사업장 규모,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등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월별 지원금 산정**

* 다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포함) 및 월보수액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③ **(지원방식)**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단, 사업주가 별도의 플랫폼 이용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플랫폼 종사자가 보험료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보험료 지원금 매월 지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	공단	공단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	공단	공단
보험료 지원금 신청	지원여부 확인/결정	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징수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확인	국고보조금 지원 (플랫폼은 계좌이체)

○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노무제공자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 한편, 사업주 또는 플랫폼종사자가 **둘 이상의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플랫폼에서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 (예시) 플랫폼종사자가 A, B 사업주에게 가, 나, 다 플랫폼을 각각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지원요건 충족 시 A, B 사업주의 가, 나, 다 플랫폼에서 발생한 모든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 사업주가 **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이미 한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가 **새로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

* 다만,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만 신청이 되어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신청 필요

2.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 고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은 법 제37조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과세소득(「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징수사무대행지원금**”이라 한다)
2.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및 보수총액 신고** 등의 보험사무 처리업무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이라 한다)
3.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지원금(이하 “**적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 지원 목적

-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공인노무사(2년 이상 경력), 세무사(2년 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등 수행 필요

- 다만,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 제외

- * ▲ 위임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
- ▲ 위임사업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사업소득금액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6호))

□ 지원 내용

○ 아래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 지원금, 적용촉진장려금 지급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6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 종류	지급기준	지원내용	비고
징수사무 대행지원금	◆ 건설업·별목업 자진신고 사업장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한 경우	◆ 반기별 16,000원	◆ 개산보험료 상반기 전액 납부 시 하반기에도 인정
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래 신고·통보를 한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 확인신고 -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월평균보수) 통보	◆ 분기별 위임사업주 1명당 12,000원 (6건 이상 신고시 15,000원, 15건 초과시 18,000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 병행 시 위임사업주 1명당 6,000원(일안자금 신청 10건 이상시 10,000원) 추가지급 - 동일인에 대한 고보 신고와 산재 신고는 1건으로 봄
적용촉진장려금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아래 신고·통보를 한 경우 - 고보·산재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고보·산재 보험 관계 성립신고	◆ 위임사업주 1명당 40,000원	

3. 플랫폼사업자 보험사무지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⑦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보험사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 목적

- '22.1.1.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사무 이행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 제도시행 초기 플랫폼사업자에게 보험사무 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용보험 성실 신고 유인을 제공
- * 따라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직접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사업주는 아니나 고용보험 관련 신고 의무가 부여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지원 내용

- 법정 기한 내 고용보험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경우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플랫폼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각 1건당 **1,000원**(분기별 노무제공자 1인당 총 6건(일반+단기) 인정)
- * (일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사유가 있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월보수액 통보(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단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플랫폼사업자가 분기에 부과된 월 고용보험료를 각각 납부고지 기한 내(매월 10일) 납부한 경우, 동일 분기 피보험자

관리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1인당 2,000원**

* 법정 납부기한 내 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에 대한 납부비율이 95% 이상일 경우 완납으로 판단

□ 지원 상한

○ 한 개 업체에 분기당 지급될 수 있는 **보험사무 지원금 상한액은 56백만원***(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포함)

* '22년 연 최대 168백만원, 분기별 최대 지원금을 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7천명 까지 지원 가능

** 고용보험 실제 신고 실적, 지원금 집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도 내 상한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절차

○ **(지원신청)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분기 마지막 15일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 가능(15일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 1분기(1,2,3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6.15. 부터 1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2분기(4,5,6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9.15. 부터 2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3분기(7,8,9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12.10. 이후 3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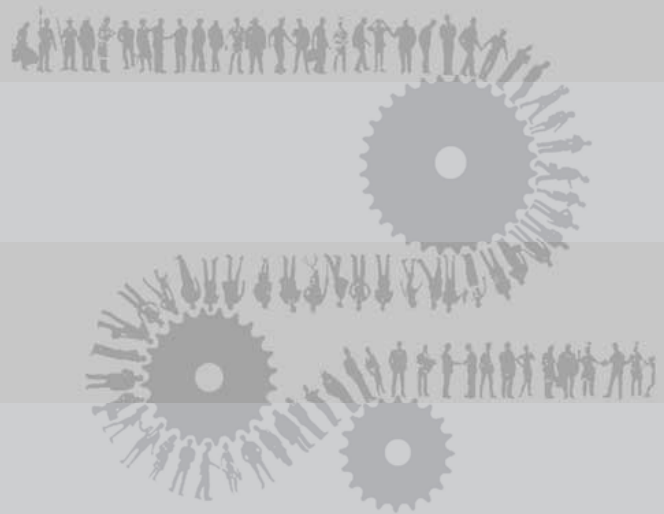
4분기(10,11,12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내년 3.15. 부터 4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신청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Part 2.

주요 Q&A



1. 일반 · 단기노무제공자 공통 사항

1-1. 고용보험 적용 직종



01

['21.7월 적용 직종'] '21.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어떤 직종인지?

- ⑥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설치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1.2.15.)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래 12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
 -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설계사**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 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택배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 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 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방과후학교 강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수출입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02

['22.1월 적용직종] '22.1.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는 어떤 직종인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설치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1.2.15.)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래 2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
 -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이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택배기사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03

['22.7월 적용직종] '22.7.1.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어떤 직종이며, 그 외의 노무제공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설치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22.3.4.)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래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이후에는 '21.12.23.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별 소득수준을 고려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추진** 예정

1-2. 고용보험 적용 요건



01

[연령] 65세 이전 고용보험 당연가입 후 65세 이상이 되었고, 이후 적용제외기준 소득(80만원) 미충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취득이 가능한지?

- ⑥ (일반 노무제공자) 소득감소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 이후에도 **65세 전에 체결했던 동일한 노무제공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다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으로 회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종료시점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재취득됨
 - 65세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동일한 사업주와 시간 공백 없이***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갱신 등)**한 경우도 피보험자격 인정
 - * 토요일(법정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을 것
 - 또한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시간 공백 없이**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종전 계약과 계약의 실질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보험자격 인정
 - 그 외 65세 전의 노무제공계약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노무제공계약**을 65세 이후에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미인정
- ⑥ (단기 노무제공자) 일반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65세 전에 체결했던 동일한 단기 노무제공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65세 이후 노무제공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산입
 - 65세 전에 단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던 **동일한 사업주와 시간 공백 없이** 65세 이후에 **단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65세 이후 노무제공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산입
 - 단 65세 이후 체결한 단기 노무제공계약의 사업주가 **종전과 동일한 사업주가 아닌 경우** 시간 공백 여부에 관계없이 65세 이후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미산입
 - 노무제공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사업주의 공유콜을 수행하는 단기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65세 전후로 시간 공백없이 계속 **공유콜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65세 이후 노무제공일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미산입



02

[당연적용]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 취득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⑥ '21.7.1.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3쪽 참고), '22.1.1.부터 2개 직종의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3쪽 참고), '22.7.1부터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3쪽 참고)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 노무제공자의 **가입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요건(월보수액 80만원 이상, 65세 미만)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됨
 - * 단기노무제공계약의 경우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03

[사업자등록] 노무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지?

- 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3쪽 참고)에 종사하는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위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



04

[명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 ⑤ 본인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타인의 명의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착오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정정 또는 변경 가능
 -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05

[동거친족] 사업주와 동거친족 관계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인정되는지?

- ⑤ 우선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인 노무제공자와 다른 노무제공자가 함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인 동거친족의 경우(1촌 이내)에는 사회통념상 공동 경영 주체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불인정하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노무제공 여부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 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 외의 2촌 이상의 동거친족인 경우, 다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요건 충족 시 피보험자격을 인정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관련 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 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⑤ 한편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거친족인 노무제공자만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공동 경영 주체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불인정하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노무제공 여부 등 관련 자료를 공단에 제출 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2.

일반노무제공자

2-1. 일반노무제공계약의 기준



01

일반노무제공계약과 단기노무제공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⑥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일반노무제공계약과 단기노무제공계약을 구분하게 됨
 - 일반노무제공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를 의미하며,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임
 - 단기노무제공자는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를 의미하며, 월 보수액 기준(80만원 이상)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

2-2. 고용보험 적용 요건(소득)



01

[기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은 얼마이며, 해당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⑥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



02

[소득변동]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다음 달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고용보험 적용제외에 해당하는지?

- ⑥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면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함**
 - 따라서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거나, **월 보수액을 80만원 미만으로 통보**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
- * 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2-3.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01

[적용요건] '22.1.1.부터 소득합산을 통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제2항2호에 따라

- ①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노무제공자가,
- ②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합산 보수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80만원 이상이며,
- ③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④ 노무제공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득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됨

* 전월 합산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달의 초일부터 신청 가능

(예): 1월 합산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2.1.~2.15. 소득합산 신청 가능



02

[일반·단기노무제공자 간 신청] A사업장에서는 일반노무제공자로, B사업장에서는 단기노무제공자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단기노무제공자는 월보수액 80만원 여부에 상관없이 노무제공계약 별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노무제공계약과 소득합산을 신청할 수 없음



03

[플랫폼] 여러 개의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득합산 신청이 가능한지?

☞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별개의 노무제공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소득합산 신청을 할 수 있음

3.

단기노무제공자



01

[정의] 부업이나 알바 개념으로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⑥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월 보수액 기준(80만원 이상)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됨
 - 따라서 부업 또는 알바 개념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



02

[플랫폼] 사업주(대리운전업체, 퀵서비스회사, 배달대행업체 등)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거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의 콜을 수행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

- ⑥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와 일시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에 해당하며,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됨**



03

[플랫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의 콜(단기콜 등)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⑥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노무제공을 통해 지급받은 소득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일시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보수액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됨**
 - 각각의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중취득하게 되며, 이 때 고용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액은 실업급여 지급 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됨**

4.

플랫폼 호출(콜)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01

[제휴콜(위탁콜)] 플랫폼사 간 계약에 따라 한 플랫폼에서 발생한 콜을 다른 플랫폼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플랫폼간 콜을 위탁(또는 제휴)하여 수행하는 경우

“노무제공자”는 **고객의 콜을 실제로 수행한 기사**이고,

“사업주”는 **고객의 콜을 접수 및 발주한 플랫폼사 소속 대리운전업체**이며,

피보험자 신고 및 보험료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플랫폼 사업자**임

✓ (예시) A 플랫폼과 B 플랫폼 간 계약에 따라 A 플랫폼에서 발생한 콜을 B 플랫폼으로 위탁하여 B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 C가 콜을 수행한 경우

→ (노무제공자) B 플랫폼 소속 콜을 수행한 “기사 C”

(사업주) 고객의 콜을 접수하고 발주하여 그 대가를 일부 분배받는 “A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

(플랫폼사업자) 노무제공이 최종 완료된 “B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 및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02

[기타 특이콜] 가짜콜, 문제콜(취소콜), 테스트콜 등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 가짜콜(실적을 만들기 위해 가짜로 콜 발생), 문제콜(고객의 콜 취소, 고객의 결제수단 변경에 따른 콜 취소 등), 테스트콜(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테스트를 위해 임의로 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실제 노무제공 사실이 있어 노무제공대가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03

[일(日) 산정 기준] 플랫폼 종사자가 심야에 콜을 수행하던 중, 자정 이전에 콜을 받아 자정이 지난 후 노무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어느 날을 기점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 일반노무제공자는 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일(日)’ 산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노무제공자임

- 해당 개별 기업의 정산 시간 등과는 별개로 **피보험자격 신고를 위한 ‘일(日)’은 00:00~24:00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을 수락하여 사실상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됨

✓ (예시) 단기노무제공자인 A가 1.15. 오후 11:30에 노무제공을 시작하여 1.16. 오전 00:30에 노무제공을 완료한 경우 → 1.15.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1. 일반 노무제공자

1-1. 피보험자격 취득시기



01

[시행일 이전]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시행일 이전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언제인지?

- ⑥ 원칙적으로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의 '시작일'**에 피보험자격을 취득
 - 다만 2021.7.1. 시행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12개 직종)**의 경우, 2021.7.1. 전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시작일이 아닌 **2021.7.1. 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고보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1호 가~다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
 - 또한 2022.1.1. 시행된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플랫폼종사자(2개 직종)**의 경우, 2022.1.1. 전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시작일이 아닌 **2022.1.1. 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 *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 마찬가지로 2022.7.1. 시행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5개 직종)**의 경우, 2022.7.1. 전부터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 시작일이 아닌 **2022.7.1. 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고보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1호 라~차목에 해당하는 화물차주)



[소득변동] 노무제공자가 피보험자격 취득 후 노무제공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적용제외기준 소득(80만원)미만 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소득 증가로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어떻게 되는지?

☞ 소득감소로 인한 피보험자격 상실 후 다시 소득증가로 재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소득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재취득하게 되는 '해당 월의 초일'**임

- ✓ (예시) 노무제공계약이 '22.1.1.~12.31.이며, '22.9월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여 피보험자격 상실 후, '22.10월 80만원 이상의 월보수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격 재취득일은 '22.10.1.임



[소득합산]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언제인지?

☞ 소득합산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달의 노무제공 시작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

- ✓ (예시) 다음과 같은 두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22.3.5. 소득합산을 신청한 경우 노무제공자는 2.1.부터, A 사업장은 2.1.부터, B 사업장은 2.10.부터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	계약기간	1월	2월	3월	...
A	'22.1.12.~'22.5.11.	1.12. <60만원>	2월 <60만원>
B	'22.2.10.~'22.6.7.		2.10. <30만원>

1-2. 피보험자격 상실시기



[소득감소] 노무제공계약이 '22.3.10.까지이며, '22.3월 소득이 적용제외기준 소득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어떻게 되는지?

☞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의 자격 상실일은 **해당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의 다음날'**이나, 특정 월의 소득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소득이 80만원 이하가 된 '특정 월의 초일'**임

- 해당 사례는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의 발생 소득이 적용제외 기준 미만의 소득이므로 피보험 자격 상실일은 계약 종료일인 '22.3.10.가 아닌 **해당 월의 초일인 '22.3.1.임**

* 만약 계약종료일이 속한 월(위의 경우 3월)의 발생 소득이 적용제외기준 소득 이상일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위의 경우 3.10.)



[소득감소]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경우, 예를 들어 노무제공자 A의 월보수액이 1월 100만원, 2월 60만원, 3월 50만원이라면 상실일은 언제인지?

- 노무제공플랫폼에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 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거나 **월 보수액을 80만원 미만으로 통보**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 상실 처리하므로 해당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됨

 - 사례의 경우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달은 2월, 3월이고,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이 된 **해당 월인 2월의 초일인 2.1.임.**
- * 플랫폼 사업자가 2월 월보수액을 80만원 미만으로 통보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 상실처리하고,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게 송부



[소득합산]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경우 피보험 자격 상실일은 언제인지?

- 소득합산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달의 노무제공 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

 - ✓ (예시) 노무제공자의 두 노무제공계약 종료일이 다음과 같다면 합산 신청의 대상이 되는 달인 2~5월의 노무제공종료일 중 가장 느린 날의 다음 날인 6.1. 기준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사업장	계약기간	1월	2월	...	5월	6월
A	'22.1.12~ '22.5.11.	1.12. <60만원>	<60만원>	...	<60만원> 5.11.	
B	'22.2.10.~ '22.6.7.		2.10. <30만원>	...	<30만원>	6.7. <30만원>

2.

단기노무제공자



0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단기노무제공자는 일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 ⑥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11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개월로 간주**하며,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22일 = 주당 근로일수 5일 x 연간주수 52주 ÷ 12개월

〈참고〉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 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3.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01

[근로자와의 이중취득]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시에 노무제공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④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간 이중취득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이중취득은 당연가입으로 인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한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둘 다 유지 가능함



02

[사업장 확인 가능 여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는 경우,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이 이중취득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부업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지?

④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며, 특히 노무제공플랫폼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4항에 의해 고용보험 사무처리에만 활용됨

- 아울러, 고용보험료 고지서 및 안내문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유에 한정하여 송부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노무제공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이중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03

[플랫폼]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 이상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④ 노무제공사업주가 복수의 노무제공플랫폼과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노무제공계약은 노무제공플랫폼별로 계약이 성립

- 따라서 각각의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성립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보험 적용 요건(월 보수액이 월 80만원 이상)인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 (예시) 노무제공사업주 甲이 A, B, C 플랫폼과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甲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 乙의 월보수액이 A 플랫폼 50만원, B 플랫폼 80만원, C 플랫폼 100만원인 경우 B 플랫폼, C 플랫폼과의 계약에서 고용보험을 취득



04

[노무제공자 확인 가능 여부]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고용보험 이증취득 여부를 알고 싶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⑤ 만약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이증취득 여부를 알고 싶다면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접속 및 별도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는 그 외 보험가입정보 및 보험료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음

1. 고용보험료율



0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사업주-노무제공자간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노무제공자의 경우, 전체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1.6%이며, 이에 대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씩 부담함

2.

부과기준소득(월평균보수/월보수액)

2-1. 월평균보수/월보수액 산정



01

[정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월평균보수와 월보수액이 같은 개념인지?

- ⑥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의 대가로 받은 월별 보수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으로는 월평균보수로,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월보수액으로 칭하고 있는 바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월평균보수와 월보수액은 동일한 개념임
- * (참고) 근로자의 경우 연 1회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12달)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월보험료를 부과하나, 노무제공자의 경우 매월 보수액 신고를 바탕으로 월보험료를 부과



02

[부과기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⑥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보수×직종별 경비율)로 산정하며, 경비율은 국세청 기준경비율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5호))



03

[부과기준소득]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기준인 월보수액은 어떻게 파악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지?

- ⑥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매월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됨
 - 월 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신고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 다만, 단기노무제공자 및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의 경우 제출 제외



04

[부과기준소득] 여러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월보수액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액이며
 - 제2호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본인이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서 동일 기간에 발생한 월보수액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소득합산 제도가 적용됨
 - 따라서 노무제공자 본인이 별도의 소득합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사업주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별로 월보수액을 산정



05

[콜수수료 외 수입] 콜무(콜 수행시 기사에게만 수익 발생), 마일리지, 프로모션, 인센티브 등 콜수수료 외에 기사에게 발생하는 수입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인지?

- ⑥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대가)에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약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임
 - “콜무, 마일리지”는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나,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노무제공과 별개로 일시적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
- ① (콜무) 사업주-고객 간 약정된 서비스 이용대가 중 “기사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로 판단
- ②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사업주가 고객에게 제공한 금전적 가치로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가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마일리지 중 노무제공자 소득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판단
 - ✓ (예시) 5만원짜리 콜에 대해 고객이 2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노무제공자가 3만원을 수령한 경우, 사업주가 마일리지 사용금액 2만원 전부를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는 5만원
- ③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당초 사업주-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대가), 사업주-노무제공자 간 약정 금액(콜 수수료 등)과 별개로 일시적인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소득이 발생되므로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

2-2. 기준보수 적용



01

[정의] 노무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보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 ⑥ “기준보수”란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정하는 금액
 - 이에 더해,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월보수액)가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월평균보수(월보수액)으로 봄**
 -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는 **월 133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 ✓ (예시) 고용보험을 취득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100만원인 경우,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인 133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기준보수(133만원)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됨
→ $133\text{만원} \times 0.8\% = 10,640\text{원}$ 이므로, 노무제공자·사업주 각각 10,640원씩 부담



02

[복수 사업장] 노무제공자가 A사업장에서 월 100만원, B사업장에서 월 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133만원 이상이므로 기준보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지?

-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에 따르면 월보수액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
 - 따라서 **각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으로 지급받는 월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133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수가 적용됨**
 - ✓ (예시) 위와 같은 경우 A사업장에 대해 133만원, B사업장에 133만원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됨
→ $133\text{만원} \times 0.8\% = 10,640\text{원}$ 이므로 노무제공자·사업주 각각 10,640원씩 부담



03

[소득합산]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A사업장에서 월 40만원, B사업장에서 월 60만원이라면, 각 사업장의 월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인 100만원이 기준 월 보수액 133만원 미만이므로 기준보수가 적용되는지?

- 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6항에 따라, **소득합산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기준보수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따라서 각 사업장의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
 - ✓ (예시) 위와 같은 경우 A사업장 40만원, B사업장 60만원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가 부과됨
 - 40만원×0.8%=3,200원, 60만원×0.8%=4,800원이므로 노무제공자 8,000원(A사업장+B사업장), A사업주 3,200원, B사업주 4,800원 부담



04

[알바, 부업] 알바 또는 부업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얻는 소득이 133만원 미만인데, 이 경우에도 기준보수가 적용되는지?

- 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 실제 보수액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부과됨**
 - 다만, 알바 또는 부업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노무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보수가 적용됨

2-3.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



01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 실제 월보수액이 아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를 따로 두고 이에 근거해 월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 ⑤ **건설기계조종사**는 사업주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대가에 건설기계 임대비용, 노무비,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순수한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타워크레인·레미콘 외의 기계는 일 단위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노무제공의 성격도 강한 편임**
- ⑤ **화물차주**는 사업주와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동시에 **개별 물량을 확보하여 운송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
 - 또한, 화물운송사업자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같은 직종 내에서도 **순소득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 ⑤ **골프장캐디**의 경우 대부분 **이용객**이 캐디에게 직접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골프장에서 캐디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골프장 등 사업장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협조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캐디의 소득 파악 인프라는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간접적으로 파악된다는 한계)
- ⑤ 이러한 직종 업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시행 전까지는
 - 실제 월보수액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른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를 따로 두고 이에 근거해 월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음
 - * 건설기계조종사(2,479,444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4,310,000원 / 택배 지·간선기사 3,150,000원 / 특정품목운송차주 4,830,000원), 골프장 캐디(2,699,994원)

2-4. 보수총액신고



01

[월보수액 신고 누락없는 경우]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가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연 1회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지?

- ⑥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연 1회 보수총액신고(차년도 3.15.까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다만, 매월 월보수액 신고를 누락없이 한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험사무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보수총액신고를 한 것으로 같음하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 예정임



02

[기초 보수 직종] 직종별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를 따로 두고 있는 직종(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는지?

- ⑥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보수총액신고에 있어 노무제공자 직종에 따른 예외는 두고 있지 않으나
 - 실질적으로는 보험료 산정 기초 보수를 따로 두고 있는 직종인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택배 자·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캐디의 경우 월보수액 신고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보수총액신고를 할 실익도 없어 보수총액신고를 받고 있지 않음
 -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추진 예정임

3.

고용보험료 부과

3-1.

고용보험료 산정



01

[보험료 부담] 노무제공자가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주가 여러 명일 경우, 고용보험료는 각각 어떻게 부담하는지?

- ⑥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복수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각각의 계약을 통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
 - ✓ (예시) 노무제공자 A가 사업주 가,나,다와 각각 월 80만원 이상의 3개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 가,나,다는 각각 노무제공자 A와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월 소득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



02

[소득합산] 노무제공자가 소득합산을 신청할 경우,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월 40만원, B사업장에서 월 60만원, C사업장에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면, 각 사업장과 노무제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 ⑥ '22.1월부터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 보수액을 합산하기 원하면 **노무제공 계약의 월 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음
 - 이 경우 각 사업주는 **해당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기준보수는 적용받지 않음)
 - 노무제공자는 자신이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계약들에서 지급된 소득의 합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
 - ✓ (예시) 위와 같은 경우 A사업장 사업주 부담분은 $40\text{만원} \times 0.8\% = 3,200\text{원}$, B사업장은 $60\text{만원} \times 0.8\% = 4,800\text{원}$, C사업장은 $70\text{만원} \times 0.8\% = 5,600\text{원}$, 노무제공자는 $170\text{만원} \times 0.8\% = 13,600\text{원}$ 각각 부담



03

[상·하한액]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상·하한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 ⑥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월별보험료 441,150원, 연간보험료 5,293,800원**임
 - 보험료 하한액은 법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준보수 미만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기준보수 (월 133만원)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하한액은 21,280원**(133만원×1.6%)임 (노무제공자·사업주 각각 10,640원씩 부담)

3-2. 고용보험료 부과 및 납부



01

플랫폼을 사용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및 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 ⑥ 노무제공플랫폼을 사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업주인 노무제공플랫폼**이 원천공제 하거나, ②**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를 보수로부터 원천 공제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
- ⑥ **(일반노무제공자)**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월 보수액 통보**를 하면(월 보수액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장 최근에 신고한 보수액 기준), **해당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
 - ✓ (예시) '22.1.1.부터 일반노무제공을 한 경우,
 - 1월 노무제공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2.15까지, 월 보수액 통보를 2월 말일까지 해야 함 → 통보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3월 20일경에 1월분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 → 4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 ⑥ **(단기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이 있었던 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 상의 노무제공대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
 - ✓ (예시) '22.1.1.에 단기노무제공이 있었던 경우,
 - 2월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확인신고서 상 노무제공대가를 기준으로 2월 20일경에 1월분 고용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 → 3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4.

고용보험료 지원



01

[지원 요건] 근로자의 경우 영세사업장에 일정 부분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⑥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

①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② (보수수준)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③ (지원제한) 재산, 종합소득 기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 재산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5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말함

- 전년도(소득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전전연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 * 종합소득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4조제1항 1호의 종합소득을 말함



02

[지원 절차] 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의 경우 플랫폼에서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이행하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⑥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total.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로 지원신청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 서식」, 법제처 종합법률정보센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를 **우편·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음

〈근로복지공단 특고센터 주소·팩스번호〉

서울 (서울, 강원, 경기북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팩스번호	1부	0502-223-3102	3부	0502-223-1204
		2부	0502-223-1203	예술인가입부	0502-223-3203
경인 (인천, 경기남부)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팩스번호	1부	0502-451-1102	2부	0502-451-1103
부산 (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팩스번호	1부	0502-661-1102	2부	0502-661-1103
대전 (대전, 충남·북, 광주, 전남·북)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팩스번호	1부	0502-870-1102	2부	0502870-1103

1. 수급요건

1-1. 피보험 단위기간



01

[연속 필요 여부] 실업급여 수급요건으로 24개월간(기준기간) 12개월(피보험 단위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뜻인지?

- ⑥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 노무제공자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은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기간(2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할 필요는 없음**
 - ✓ (예시) '24.1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아래 노란색 표시 월과 같을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

'22.1월	'22.2월	'22.3월	'22.4월	'22.5월	'22.6월	'22.7월	'22.8월	'22.9월	'22.10월	'22.11월	'22.12월
'23.1월	'23.2월	'23.3월	'23.4월	'23.5월	'23.6월	'23.7월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02

[근로자 합산 가능 여부] 근로자로 근무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도 합산할 수 있는지?

- ⑥ 아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 노무제공자 또는 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아래 산식을 충족**하여야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다만,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 (예시) 배달앱을 통해 라이더로 일하고 있는 A가 이전 회사에서 근로자로 15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배달라이더로서 3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게 됨

⇒ 다음과 같이 산식을 충족: $1 - \frac{3}{12} \leq \frac{150}{180}$

- 또한, 위 산식을 충족하더라도 노무제공자로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어야 함



03

[이중취득]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로 동일기간(예를 들어 6개월간) 동안 이중취득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를 합산하여 12개월이 되는 것인지?

- ⑥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만 인정**
 - 따라서, 사례와 같이 동일기간 동안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로 이중취득되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6개월)에만 포함됨**
 - 다만,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 산정 시**에는 상한액(일 66,000원) 이내에서 각 보수액을 합산하여 반영



04

[이중취득 이력] 노무제공자로 일하기 전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⑥ 노무제공자로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로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아래 산식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 유리하도록 피보험 단위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함**

$$1 - [\text{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12\text{개월}] \leq$$

$$[\text{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div 180\text{일}] +$$

$$[\text{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div 9\text{개월}]$$

✓ (예시)

- ① 근로자 VS 예술인: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6개월(156일)간 가입된 경우 위 산식의 우변이 근로자는 0.87, 예술인은 0.67로 산정되어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유리
- ② 일용 근로자 VS 단기 예술인: 일용 근로자와 단기 예술인으로 11일간 가입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있어 일용 근로자는 일한 일수만큼만 인정되고 단기 예술인은 월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간주되므로, 위 산식의 우변이 일용 근로자는 0.06, 단기 예술인은 0.11으로 산정되어 단기 예술인이 더 유리



05

[단기]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 ⑥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산정은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22일 = 주당근로일수 5일 x 연간주수 52주 ÷ 12개월

1-2. 이직사유



01

[플랫폼] 플랫폼 기반 종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강제 해고 당할 가능성이 없는데, 실업으로부터 보호할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닌지?

⑥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로 이직 당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으로 정하는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득감소 기준**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동일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 ②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②**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 소득감소의 정도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되,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예) ▲ 노무제공자가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했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가 의도적으로 콜을 거부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중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월 소득이 0원인 경우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의도적인 소득감소라고 보여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02

[자발적 이직]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㉔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예술인과 동일하게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노무제공자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이외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득감소 기준**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 노무제공계약(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 ②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②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 소득감소의 정도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되,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예) ▲ 노무제공자가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했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가 의도적으로 콜을 거부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중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월 소득이 0원인 경우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의도적인 소득감소라고 보여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소득감소 요건] 노무제공자에 대한 소득감소 요건과 관련하여 이직 전 3개월 간 유효한 노무제공계약 소득과, 비교대상이 되는 전년 동일기간 노무제공계약 소득은 같은 노무제공계약이어야 하는지?

- ⑥ 소득감소 판단에 있어 전년 동일기간 노무제공계약의 소득은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나,
 - 전년 동일기간에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의미
 - * (예) 사업주는 다르지만 모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한사유]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 관련하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의미하는지?

- ⑥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등 「고용보험법」 제 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규정된 사유를 의미
 - 다만,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봄**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따른 **소득감소 기준**
 -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 동일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 ②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평균소득보다 적으면서, **②**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 이상 적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
 - 소득감소의 정도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되, 노무제공자가 **소득감소를 의도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 예) ▲ 노무제공자가 의도적으로 계약금액을 낮추도록 요구했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경우, ▲ 대리운전기사가 의도적으로 콜을 거부하였다는 사업주의 진술이 있는 경우,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중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은 월 소득이 0원인 경우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의도적인 소득감소라고 보여지는 사정이 있는 경우
 -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질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

1-3. 기타 수급요건



0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무제공자가 만 65세 이상이 된 후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더라도 수급받을 수 없는지?

- ⑥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무제공자가 적용제외 대상 연령인 **만 65세 이후에도 단절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이후 이직을 하게 된 경우,**
 - 해당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급신청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음**

2.

구직급여 지급

2-1.

지급수준 및 기간



01

[실업급여 수급액] 구직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⑥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임**
 - 다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6,600원*임**
 - *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일액인 44,333원 미만인 경우 44,333원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므로, 이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44,333\text{원} \times 60\% = 26,600\text{원}$
 - 또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인 **건설기계조종사** 구직급여일액은 **49,588원**, **화물차주**의 구직급여일액은 **세부 직종에 따라 66,000원 또는 63,000원**(단 유통배송기사의 경우 실보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 계산), **골프장캐디**의 구직급여일액은 **53,999원임***
 - * ▲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초일액을 82,648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82,648\text{원} \times 60\% = 49,588\text{원}$
 - ▲ (화물차주 -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초일액을 143,666원으로 정하고 있어 구직급여일액이 $143,666\text{원} \times 60\% = 86,199\text{원}$ 이 되어야 하나, 상한액 66,000원을 넘으므로 66,000원으로 적용
 - ▲ (화물차주 - 택배 기간선기사)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초일액을 105,000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05,000 \times 60\% = 63,000\text{원}$
 - ▲ (화물차주 - 특정품목운송차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초일액을 161,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구직급여일액이 $161,000\text{원} \times 60\% = 96,600\text{원}$ 이 되어야 하나, 상한액 66,000원을 넘으므로 66,000원으로 적용
 - ▲ (골프장캐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기초일액을 89,999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89,999\text{원} \times 60\% = 53,999\text{원}$
- ✓ (예시)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이 2,400만원이고,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가 240일인 경우
 - ⇒ 기초일액은 $2,400\text{만원} \div 240\text{일} = 10\text{만원}$, 구직급여일액은 $10\text{만원} \times 60\% = 6\text{만원}$



02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고용보험법 상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기간 및 이직일 당시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발생할 수 없어 **실제적으로는 150일~270일**임
 -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단,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넣지 않음)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2-2. 대기기간



01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7일**임
 - 다만 **소득감소 비율 30% 이상**으로 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대기기간은 **4주**이며, **소득감소 비율 50% 이상**인 경우 대기기간은 **2주**임

1. 수급요건



01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는 **아래와 같은 수급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

-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②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③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한편, 노무제공자와 근로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인정

*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2. 출산전후급여 지급



01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 지급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이며,

- 상한액은 월 200만원, 하한액은 월 80만원임

☞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최대 90일**로서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하여 연속한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임

3.

육아휴직급여



01

노무제공자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⑥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가입 특고, 예술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 단, 현재 노무제공자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1.8%)보다 낮은 1.6%의 고용보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도 병행 필요

1. 고용보험 신고

1-1. 고용보험관계 관련



[플랫폼 특례조항] 일반 노무제공자와 달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이 대신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이유는?

- ⑥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직종 사업주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주가 영세하여 보험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반면,
 - 노무제공플랫폼은 실질적으로 해당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노무제공계약 및 이에 따른 노무제공일수·보수액 등 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있어, 노무제공플랫폼에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였음
 - 이는 사각지대 없이 플랫폼 기반 종사자를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영세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임
- ⑥ 한편, 플랫폼이 곧 노무제공자의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



[노무제공플랫폼사업신고 및 이용사업개시신고]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⑥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사무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이용계약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사업자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 ① 노무제공플랫폼 사업 신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9서식)와
 - ② 이용사업개시신고(별지 제22호의20서식)를 하여야 함
-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개시신고를 하면 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03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약관] 사업장과 노무제공플랫폼이 서면이 아닌 전산상으로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지?

- ⑥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은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처리하는 시스템이며,
 -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약관’은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므로, 플랫폼 이용관계에 있는 모든 노무제공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

1-2. 피보험자격 관리 관련



01

[피보험자격신고]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⑥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 노무제공자가 일반노무제공자인지 단기노무제공자인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방식 등이 달라짐
- ① (일반노무제공자) 계약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 **노무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통보**를 해야 함
- ② (단기노무제공자) 계약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노무제공일수, 노무제공대가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02

[과태료]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상실 등)에 대한 미신고,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⑤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22.12.31.까지 '22.1.1.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된 플랫폼종사자 2개 직종, '22.7.1.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된 특고 5개 직종 대상으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취득·상실 등)에 대한 지연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면제 중(필요 시 연장 검토 예정)**

* 단, '21.7.1.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된 특고 12개 직종의 경우 집중신고기간 종료



03

[반복 계약] 사업주가 노무수령이 필요할 때마다 노무제공자와 일정기간의 노무제공계약을 반복하여 체결(예를 들어 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 그때마다 취득 및 상실신고를 반복하여야 하는지?

⑤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함

-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동일한 노무제공자와 다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 및 (노무제공계약 종료시)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2.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2-1.

원천공제



01

[원천공제 방식]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공제를 할 경우, 어떻게 노무제공사업주 및 노무제공자로부터 원천공제 해야 하는지?

- ⑤ 플랫폼 사업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월별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방식을 권고함
 - (일반노무제공자) 공단에 통보하는 월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부담분을 산정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로부터 공제
 - (단기노무제공자) 호출건별, 일별, 월별 순으로 단계적으로 공제 (단수 조정 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함)



02

[원천공제 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고용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천공제를 한 금액을 보관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이나 관리 등에 제한이 있는지?

- ⑤ 원천공제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각각 산정하여 월별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천공제액과 실 보험료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공제 또는 반환 등이 즉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플랫폼사업자는 고용보험 납부를 위해 원천공제한 금액을 보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금액은 **고용보험료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타 목적에 사용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03

[원천공제] 플랫폼 사업자의 예치금이 0원이 되거나, 노무제공사업주의 계좌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⑤ 원천공제 및 납부의 의무는 노무제공플랫폼에 있으므로, 계좌 이체 실패 등으로 원천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원천공제 의무자인 플랫폼사업자가 미납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다만 플랫폼사업자가 개설한 고용보험료 전용계좌에 이자수익 등의 발생이 예상되고, 전용계좌의 예치금은 고용보험료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 전용계좌의 이자수익 등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고 고용보험료 미납금의 납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콜수수료 외 수입] 콜무(콜 수행시 기사에게만 수익 발생), 마일리지, 프로모션, 인센티브 등 콜수수료 외에 기사에게 발생하는 수입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인지?

-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대가)에서 **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 약정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임**
 - “콜무, 마일리지”는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아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나**,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노무제공과 별개로 일시적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
- ① (콜무) 사업주-고객 간 약정된 서비스 이용대가 중 “기사의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로 판단**
- ② (마일리지) 마일리지는 사업주가 고객에게 제공한 금전적 가치로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을 대신하여 대가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해당 마일리지 중 노무제공자 소득 배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수로 판단**
- ③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 당초 사업주-고객 간 약정 금액(서비스 이용대가), 사업주-노무제공자 간 약정 금액(콜 수수료 등)과 별개로 **일시적인 기준에 따라 이벤트성으로 소득이 발생되므로 고용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

2-2. 보험료 정산



플랫폼 사업자 원천공제 이후 노무제공자의 정정·변경 등으로 고용보험료 정산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노무제공자의 정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함
 - ① **일반노무제공자**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상실일 등 자격정보에 대한 정정 신고 및 월보수액 재통보
 - 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일 등 자격정보에 대한 정정신고 및 월보수액 변경·정정을 위해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수경
- 또한 플랫폼사업자는 **원천공제대장을 정정한 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에게 정정한 금액에 따라 추가 공제 또는 반환을 하여야 함**

3. 전산 구축 및 관리

3-1. 전산 구축



01

[전산 구축] 노무제공플랫폼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산을 구축해야 하는지?

⑤ 노무제공플랫폼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및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 등을 위한 전산을 아래와 같이 구축하여야 함

① 고용보험 관련 신고

① 매월 신규 개시·종료 사업장 신고: 플랫폼 이용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장(대리운전업체, 커서서비스업체, 배달대행업체 등) 관련 정보를 구축

② 사업장 신고 정보*: 플랫폼 이용사업 개시·종료신고서 및 신고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구축

*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플랫폼 이용 개시일, 플랫폼 이용 종료일 등

③ 노무제공자 정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 내용확인신고서 및 신고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이용사업주별 노무제공자 신고 정보를 월단위 구축

* (취득)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취득월의 월보수액,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국적, 직종코드, 원천공제액(노무제공자 부담분) 등

(상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상실일, 이직월의 월보수액(이직월 전월 보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월 보수 포함), 상실사유 등

(월보수액 통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보수액, 원천공제액(노무제공자 부담분) 등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노무제공일자, 월보수액,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국적, 직종코드, 원천공제액(노무제공자 부담분) 등

② 보험료 원천공제 등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개선('제2절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참조)

③ 사업주 및 노무제공자의 자료제공 요청

- 고용보험료 지원에 따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원천공제액 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료 원천공제 정보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보험료 부과 정보, 보험료 지원액 산정 정보 등이 제공 될 수 있어야 함

④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 지원대상 증빙자료

- 월, 분기별 피보험자 신고내역과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의 정보 구축



02

[영세 플랫폼] 영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 이행을 위한 대규모 전산 구축이 어려운데, 이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⑥ 소규모 노무제공플랫폼의 고용보험 신고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소규모 플랫폼사의 OPEN API 방식 신고를 위한 전산개발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은 향후 계속 이용 가능
 - (1차, '22.1월~) 고용산재토탈서비스(total.koomwel.or.kr)에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신고
 - (2차, 22.7월~) 엑셀파일 업로드 방식과 API 방식의 신고 병행

3-2. 자료의 관리



01

플랫폼사업자가 수집·관리하여야 하는 플랫폼 이용 및 보험관계 관련 자료 및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⑥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 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플랫폼 이용계약 개시·종료일, 사업주 보험관계 및 노무 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 등)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장 관련 정보)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 (노무제공자 관련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직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 일수, 월보수액(다만, 단기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 및 노무제공대가)
- ⑥ 또한 플랫폼사업자는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노무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플랫폼에 보관**하여야 함

4.

보험사무 지원



01

[지원금]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신고를 위해 전산 구축 비용 및 전담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소모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 ⑥ '22년부터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신고 및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신고 등 실적에 비례하여 지원**
- ① **(피보험자관리지원금)** 법정 기한 내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 신고 각 1건당 1,000원 지원
 - **(일반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월보수액 통보 → 월 1회 실적 인정(분기별 3회)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확인신고 → 월 1회 실적 인정(분기별 3회)
- * 플랫폼이 같은 노무제공자에 대해 일반 및 단기노무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각각의 실적을 인정 (노무제공자 1인당 분기별 최대 6회 실적 인정)
- ② **(징수사무대행지원금)** 분기에 부과된 월 **고용보험료**를 각각 납부고지 기한 내 **완납한 경우 동일 분기 피보험자관리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 1인당 2,000원 지원
- ③ **(지원상한)** 플랫폼 1개 업체당 **분기별 최대 56백만원** 지원



02

[신청 방법]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⑥ **고용산재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분기 마지막 달 15일 이후** 부터 지원금 조회 및 신청 가능
 - * 1분기(1,2,3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6월 15일부터 1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2분기(4,5,6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9월 15일부터 2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3분기(7,8,9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12월 10일 이후 3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 4분기(10,11,12월) 보험사무업무 수행 → 다음해 3월 15일부터 4분기 지원금 신청 가능



01

[성실신고] 일부 플랫폼사업자만 고용보험 신고를 성실하게 할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플랫폼사업자로 노무제공자가 이동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⑥ **고용보험 신고를 성실하게 하는 플랫폼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고용보험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및 조사에 불응하는 플랫폼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 이러한 제재 수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용불량자 등 소득노출을 꺼리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성실하게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이행하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



02

[사업주] 사업주가 노무제공플랫폼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⑥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라 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 의무는 노무제공플랫폼에 있으나,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과태료 조항은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플랫폼사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장 및 노무제공자 정보 요구(조사·보고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03

[피보험자격신고] 플랫폼이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⑥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를 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04

[플랫폼사업자] 플랫폼사업자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피보험자격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⑥ 플랫폼사업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01

[소득노출 우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득이 국가에 파악되어 다른 사회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지?

- ⑥ 노무제공자의 소득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로, 플랫폼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4항에 의해 **고용보험 사무 처리에만 활용**됨



02

[적용사업]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됨에 따라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노무제공자의 경우, 근로자보다도 안정성이 취약하고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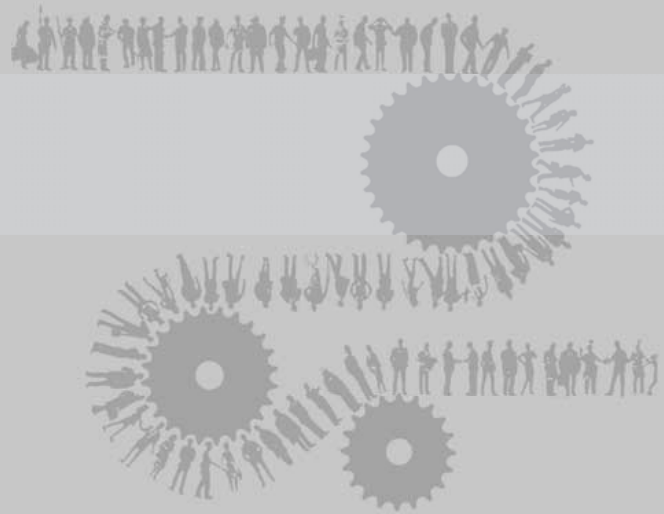
- ⑥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인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에만 적용되며, 사업주 훈련 지원금과 관련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노무제공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제13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상 소득기준: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람
- ▲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고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금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람

Part 3.

참고자료



서식1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10쪽, 21쪽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12. 31.>

[]예술인 []노무제공자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개시일	(예술인)계약 총소득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종료일	(노무제공자)월보수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제104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제125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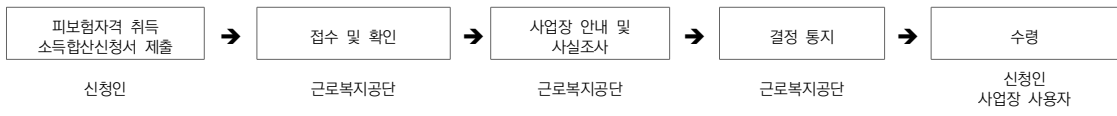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위 신청서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月) 단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예술인 또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란에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총소득을 적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3.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13쪽, 62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예술인 종사 사업장)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상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정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신청 시 괄호에 "√" 표시를 합니다)
-------------	---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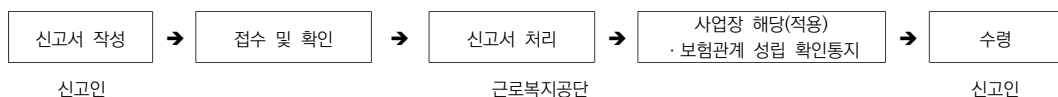
작성방법

공동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	<p>※ 예슬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명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p>※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특수 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슬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슬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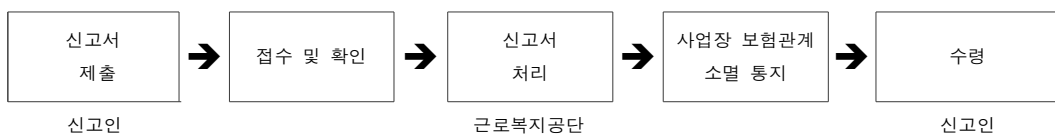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 "신고사유"란에는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서식4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15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0서식] <신설 2021. 12. 31.>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노무제공 플랫폼사업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종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 수	
	노무제공자 직종 [] 퀵서비스기사 [] 음식배달기사 [] 대리운전기사		
주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고용보험 성립일	고용업종코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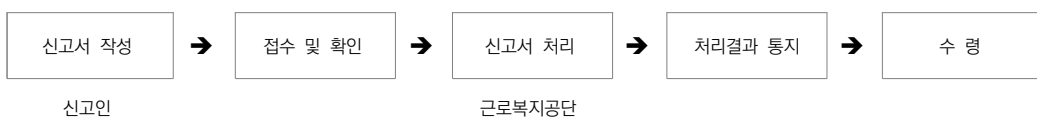
유의사항

1.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별지 제22호의20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 제출 시 적은 노무제공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 시 직종을 퀵서비스 기사로 신고한 경우, 대리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위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22호의22서식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를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신고사항란"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적습니다.
2.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란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신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여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이용 사업장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일"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사업장이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서식6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 (15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2서식] (신설 2021. 12. 31.)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대표자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장명		전화번호	

연번	신고사항	
1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2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3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4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5	이용개시번호	
	이용 사업장명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7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17쪽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	팩스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구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	----	----	---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종 부호	자격 취득일	국적	체류 자격	고용보험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보수액)	입직일	휴대전화	해당 직종지만 기재 (2쪽 ※신택단 제외)
1										방문판매원 임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배송수단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방문판매원 임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배송수단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방문판매원 임직유형
										택배/퀵기사 배송수단
										화물차주 배송수단
										건설기계 종류
										유통배송기사 등 월 소득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제77조의7제1항·제77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1항·제104조의12제1항·제104조의1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제1항제1호·제125조의9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취득·입직을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7)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습니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직종부호란에는 [3쪽]의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1.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국적 및 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게 작성하며, 외국인만 적습니다.
 3. 예대출인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평균보수"(노무제공 개시 이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 총액을 예상 총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평균보수(월보수액)는 "월보수액"(노무제공일에 실제 지급된 보수액 또는 노무제공 개시 이후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액)을 적습니다. 다만, 직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6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 수출입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자동차·곡물기류·곡물 사료의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53~956, 962, 963),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콜프장캐디(직종부호: 959)에 해당하는 경우 월보수액을 적지 않습니다.

예출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교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5. 노무제공자(제4호 단서의 노무제공자는 제외)의 경우 별도 서식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월보수액)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 사용)를 작성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평균보수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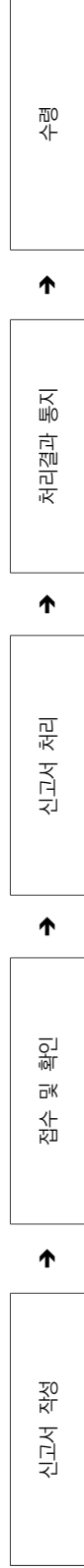
1. 입직일은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 개시일을 말합니다.
 2. 방문판매원 임직유형은 직종이 "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하단 직종별 추가입력번호 등 표에 있는 번호 중에서 골라 적습니다.
 3. 배송수단은 직종이 택배기사(직종부호: 944), 퀵서비스기사(직종부호: 957)또는 화물차주(직종부호: 952~956, 961~966)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되는 배송수단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4. 건설기계종류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선택)에 명시된 건설기계종류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직종부호: 952)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아래(※선택)에서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골라 적습니다.
 5. 유통배송기사 등의 월 소득란은 직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5호의2, 같은 조 제13호마목·비목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택배 지·간선기사(직종부호: 961), 자동차·곡물기류·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직종부호: 962, 963), 유통배송기사(직종부호: 964, 965, 966)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계산대상 공급가액의 월합계액을 적습니다.

신제보험	방문판매원	임직유형	① 월 기준 소득 · 일수 이상 ② 사업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인정 신고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배송수단	① 화물자동차 ② 승용승합자동차 ③ 이륜자동차 ④ 도보 · 자전거 · 지하철 ⑤ 기타
※ 선택	화물차주	기계종류	①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미만) ② 일반형 화물자동차(5톤 이상) ③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제외) ④ 견인형 화물자동차(피견인형 포함) ① 불도저 ② 굴삭기 ③ 로더 ④ 자레터 ⑤ 스캐러퍼 ⑥ 덤프트럭 ⑦ 기중기 ⑧ 모터그레이더 ⑨ 롤러 ⑩ 노상양생기 ⑪ 콘크리트방수플랫 ⑫ 콘크리트파쇄기 ⑬ 콘크리트살포기 ⑭ 콘크리트 펌프 ⑮ 아스팔트마스크플랫 ⑯ 아스팔트피니셔 ⑰ 아스팔트살포기 ⑱ 골재살포기 ⑳ 쇄석기 ㉑ 공기압축기 ㉒ 천공기 ㉓ 양타 및 항별기 ㉔ 자갈채취기 ㉕ 준설선 ㉖ 특수건설기계 ㉗ 타워크레인 ㉘ 콘크리트믹서트럭

직종 부호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외 소속) 943 학습지 · 교육교구 방문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 · 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1 방과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인컨테이너 운송) 957 퀵서비스기사 958 대리운전기사 959 골프장캐디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961 택배 지·간선기사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63 화물차주(곡물·가루 · 곡물 · 사료 운송)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점포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 · 배송)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 · 주점 식자재 · 식품 운송 · 배송) 966 유통배송기사(기관 구내식당 식자재 · 식품 운송 · 배송)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처리 절차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유의사항

1.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7)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노무제공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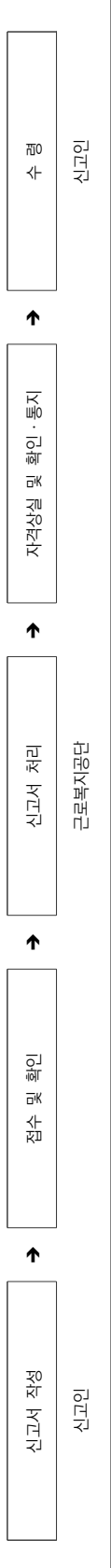
- | | |
|----|---|
| 공통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사업관리번호를 적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으며,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업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미만일 경우 상실일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상실사유"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수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수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수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
|----|---|

- | | |
|------|--|
| 고용보험 | ◆ "상실(이직)사유 코드"란에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습니다.
◆ 자진이직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이직, 12. 사업장 이전, 노무제공조건 변동, 보수 체불, 계약 변동 등으로 자진이직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수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이직(계약해지 포함)
26. 피보험자(예수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2. 계약기간 만료, 사업(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3.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의 소득기준 미충족, 45.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5. "예수인 보수총액"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간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6. "노무제공자 월보수액"란의 "해당 월"란에는 이직일이 속하는 월(이하 "이직월"이라 합니다)의 월 보수액을 적고, "전월"란은 이직월의 직전월(이하 "이직전월"이라 합니다)의 월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이직월 및 이직전월 외에도 피보험 취득기간 중 보수액을 미통보한 월이 있는 경우, 별도 서식인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 통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를 작성하여 미통보한 각 월에 대한 월평균보수를 통보하기 바랍니다. |
|------|--|

예수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 ·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 |
|------|---|
| 산재보험 | 1. "이직일"란에는 노무제공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2. "이직사유"란에는 해당하는 노무제공 종료 사유의 []에 "√" 표시를 합니다.
3. 전속성이 없는 라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전속성 없음"에 "√" 표시를 합니다. |
|------|---|

처리절차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9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19쪽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1.>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 - □□□□ - □□□□□□□□ - □□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04조의7·제104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5조의3 제4항·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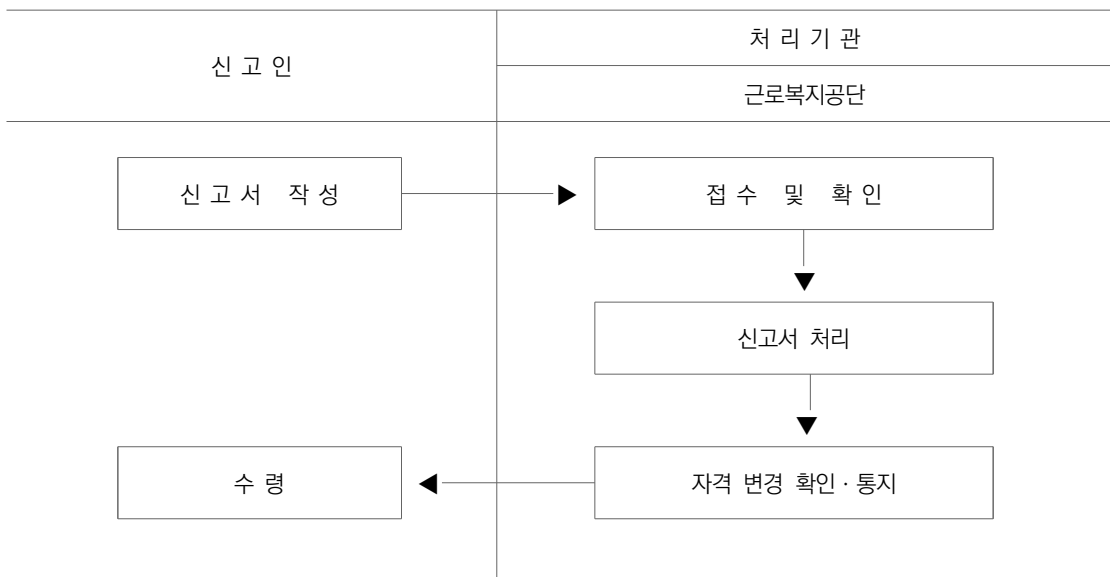
210mm×279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시작일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시작일, 휴업종료일 등의 변경은 별도 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6. "하수급인관리번호"는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작성하며, 이용개시번호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후 3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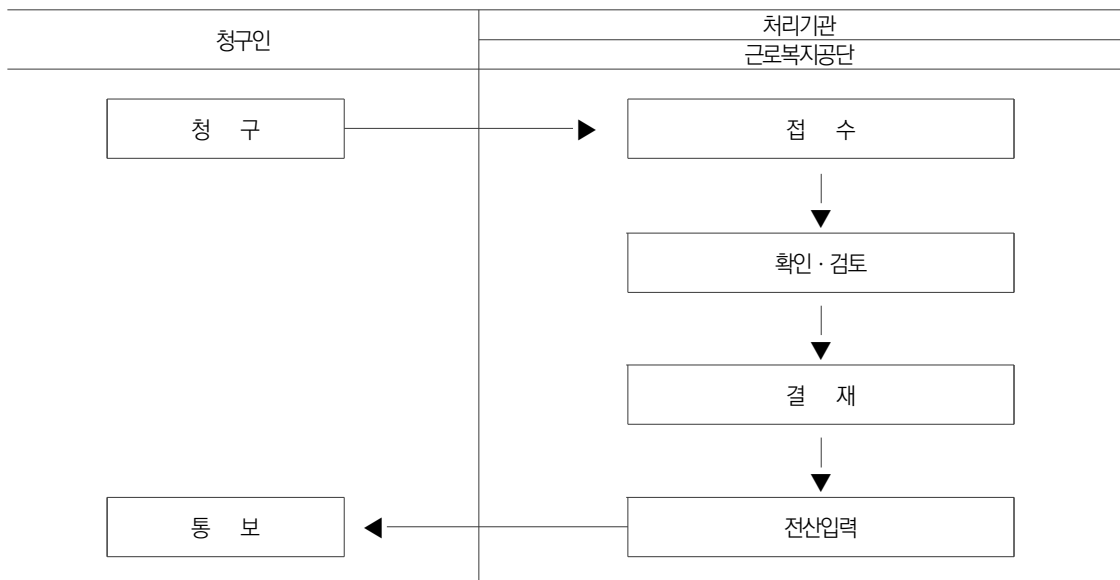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1. ① ~ ⑤란에는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2. ⑥ ~ ⑩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 3. ⑫·⑬란에는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사유 등을 표기합니다.
 - 4. ④란에는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 5. ⑤란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퇴직일) 또는 노무제공을 종료한 날(노무제공 종료일)을 적습니다.
 - 6. ⑥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아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나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7. ⑦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하수급인관리번호(아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나 이용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8. ⑫란에는 확인청구의 내용에 ○표 하기 바랍니다.
 - 9. ⑬란에는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인 경우에는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인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 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서식 11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20쪽, 33쪽, 37쪽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2. 6. 30.>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v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단기 **예술인**
확인신고서 []단기 **노무제공자** (**년 월**분)
 []산재보험 **입직·이직신고서(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명칭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산 재	건설기계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등록번호																							
노무제공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고고지사업장 종사자에 한함)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별목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서식인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직·이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제77조제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하수급인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통지한 하수급인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말하며, 정부공공사업의 문화예술용역계약 사업 등의 하수급인만 적용됩니다.
2. "이용개시번호"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사업주의 이용개시번호를 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만 적용됩니다.
3.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용합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업을 위한 이직 등)
4.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한 노무제공 종료에 따른 이직

직종 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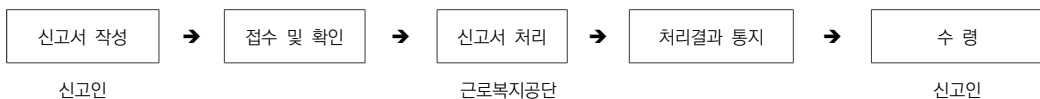
	[창작]	[실연]	[기술지원]		
예술인	441(창작)문학	442(창작)미술	461(실연)문학		
	443(창작)사진	444(창작)건축	463(실연)사진		
	445(창작)음악	446(창작)국악	465(실연)음악		
	447(창작)무용	448(창작)연극	467(실연)무용		
	449(창작)영화	450(창작)연예	469(실연)영화		
	451(창작)만화	452(창작)기타	471(실연)만화		
			462(실연)미술	481(기술지원)문학	482(기술지원)미술
			464(실연)건축	483(기술지원)사진	484(기술지원)건축
			466(실연)국악	485(기술지원)음악	486(기술지원)국악
			468(실연)연극	487(기술지원)무용	488(기술지원)연극
			470(실연)연예	489(기술지원)영화	490(기술지원)연예
			472(실연)기타	491(기술지원)만화	492(기술지원)기타
노무 제공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8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955 화물차주(우형물질 운송)	962 화물차주(자동차 운송)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의 소속)	949 대여제품관리문점점원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63 화물차주(곡물/류·곡물·사료 운송)	
	943 학습지·교육교과 방문강사	950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957 쿼터서비스사	964 유통배송기사(대규모장모 등 유통사업자 상품의 운송·배송)	
	944 택배기사	951 병마후학교 강사(노무제공자)	958 대리운전기사	965 유통배송기사(음식점·주점 식재료·상품 운송·배송)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52 건설기계종종사	959 골판짜개디	966 유통배송기사(기판 구내상당 식재료·상품 운송·배송)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60 소프트웨어개발자	967 관광통역안내사(노무제공자)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61 택배 시간근로자	968 어린이통학버스기사(노무제공자)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종사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착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베탕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 절차



서식12

피보험자격 신고서 (21쪽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2. 3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뒤쪽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	------	------------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④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등록번호	
	⑤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	⑥ 명 칭
	⑦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⑧ 대표자	

⑨ 신고사항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함)
--------	--

⑩ 신고사유	
--------	--

⑪ 근로내용 (일용근로자) · 노무제공내용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04조의6제3항·제104조의12제3항·제104조의1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제125조의3제3항·제125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OO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3

월평균보수 통보서 (33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2서식] (개정 2022. 6. 3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월평균보수(월보수액) 통보서(년 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이용개시번호(노무제공플랫폼의 경우만 적습니다)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월보수액)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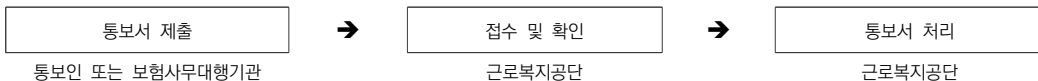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3. "월평균보수(월보수액)"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4**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62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12. 31.>

고용·산재보험도달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2제8항제3호·제48조의3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예술인·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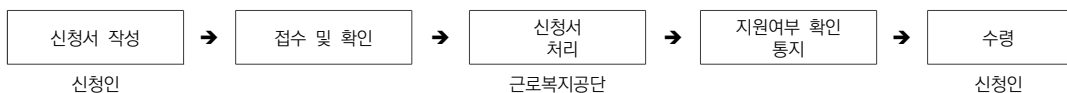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 사업주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평균보수(월보수액)를 통보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서식15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62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신설 2021. 12. 31.>

고용·산재보험도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노무제공사업 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명	사업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노무제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우편번호()	
	지원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8조의3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노무제공사업 사업주·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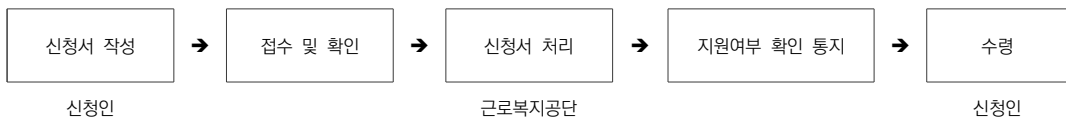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에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 개인사업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법인사업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대상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노무제공자 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원신청한 월부터 지원하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와 월평균보수 통보서를 제출하고,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는 지원받을 계좌번호를 포함하여 공단에 각각 지원신청 해야 하며, 최초 1회 지원신청으로 공단이 매월 지원대상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보험료 납부 여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지원신청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자의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 사업의 사업주는 "노무제공사업 사업주"란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정보,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자"란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정보 및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서식16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신고서 (91쪽 관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9서식] <신설 2021. 12. 31.>

고용보험 ()년도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

※ 신고는 고용·신제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CD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	------	------	----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월평균보수(월보수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노무제공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서명 또는 인) / []보함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사업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부과납부 세부절차

보험관계 신고 (성립·소멸)



피보험자격 신고 (취득·상실)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근로자

- (성립) 사업주가 근로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 ↳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 별도

- (입/퇴사 시) 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 일용근로자: 매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이중취득 금지

- 주된 사업장으로만 피보험자격 취득
 - ↳ 주된 사업장 판단기준
 -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② (월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③ (위 기준에 의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월)보험료산정>
 $\text{월평균보수} \times \text{보험료율}$

- 매월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 매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보험료 원천공제

부과과정(예시)

- 7월 근로자 입사
- 8.15.(기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8.15~18일경 보험료 산정·부과
- 8.22일경 보험료 고지(9.10.납기)

노무제공자

- (성립)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소멸) 사업주가 사업의 폐업종료 등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
 - ↳ 피보험자격 신고(취득·상실) 별도

- (노무제공계약 시) 사업주가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 / 계약만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 ↳ 단기노무제공자: 노무제공개시일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이중취득 허용

-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①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 각각 모두 취득
 - ② 노무제공자-근로자(예술인) → 노무제공자-근로자(예술인) 각각 이중취득
 - ③ 노무제공자-자영업자 → 원칙적 금지, (원하는 경우) 유지 또는 취득

<(월)보험료산정>
 $\text{월보수액} \times \text{보험료율}$

- 매월 사업주가 매월 말일까지 노무제공자 (전월)월보수액 통보
- 매월 노무제공자 전체 보험료 합산 부과
- 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

부과과정(예시)

-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 8.31.(기한) 월보수액 신고(7월분)
- 9.15~18일경 (7월분)보험료 산정·부과
- 9.22일경 보험료 고지(10.10.납기)

참고2

매월 보험료 확인 방법(사업장 또는 노무제공자)

※ (조회 방법)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 내

☞ 사업주 확인 방법: '사업장'으로 로그인 > 사업장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조회

☞ 노무제공자 확인 방법: '개인' 로그인 > 빠른서비스 중 개인별보험료부과고지조회

■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 구분	(산재) 채용일	(산재) 퇴사일	(산재) 전근일	(고용) 채용일	(고용) 퇴사일	(고용) 전근일
		일반	2013-01-07	- -	- -	2013-01-07	- -	- -

■ 근로자 부과정보

보험월	산정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경감액		사회보	
	(실근) 산정 보수액	(고직) 산정 보수액	풀평균 보수	근무 일수	(실근) 근로자 보험료	(실근) 사업주 보험료	(고직) 사업주 보험료	(실근) 경감액	(고직) 경감액	(실근) 근로자 지원금	(실근) 사업 지원
1 월	3,362,561	3,362,561	3,362,561	31	26,900	26,900	28,580	0	0	0	
2 월	3,362,561	3,362,561	3,362,561	29	26,900	26,900	28,580	0	0	0	
3 월	3,362,561	3,362,561	3,362,561	31	26,900	26,900	28,580	0	0	0	
4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5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6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7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8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9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10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1	29,410	29,410	31,250	0	0	0	
11 월	3,677,231	3,677,231	3,677,231	30	29,410	29,410	31,250	0	0	0	
12 월											
합계	39,505,531	39,505,531	39,505,531	335	315,980	315,980	335,740	0	0	0	
정산 차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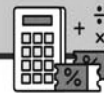
보험설계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건설기계조종사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장 가입 <small>*사업주 신고</small>	①사업장 성립신고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②사업장 변경신고 상호, 사업주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제출	③사업장 소멸신고 폐업, 사업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신고 <small>*사업주 신고</small>	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small>*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small>	②피보험자격 변경, 정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제출

보험료 산정 및 부과



①월보수액 통보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②보험료 산정, 부과, 고지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매월 15~18일) 및 고지(매월 22일경)	③보험료 납부 매월 월별보험료 납부(매월 10일까지) *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완납공제
---	--	--

부과 과정(예시)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 8월 31일까지 월보수 신고 (7월분)
 → 9.15~18일경 (7월분) 보험료 산정, 부과 → 9.22일경 보험료 고지 (10.10.납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도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작성·제출 가능



2022년 1월 1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 및 혜택은?

보험료율 1.4%(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각각 0.7%)

- 구직급여**
- (수급요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 (지급기간·금액) 기초일액의 60%(상한액은 1일 6.6만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지급

- 출산전후급여**
- (수급요건) 출산(유·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
 - (지급기간·금액) 출산 전후 90일, 출산일 직전 월평균보수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80만원)

가입 신고는 누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공제해서 같이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도 원천공제 후 납부

노무제공자가 사업주와 이용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월 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해서 납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일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보험료 원천공제

플랫폼사업자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보험료를 원천공제 후 납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도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작성·제출 가능



'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



* 기존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사업장가입 및 피보험자격신고

사업장 가입

*사업주 신고

①사업장 성립신고

노무제공자 최초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②사업장 변경신고

상호, 사업주 등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제출

③사업장 소멸신고

폐업, 사업종료된 경우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 신고

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무제공개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단기노무제공자(계약기간
1개월미만)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제출

②피보험자격 변경, 정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제출

③피보험자격 상실신고

계약종료 등으로 이직된 경우 종료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 이직월까지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료
정산 및 납부

보험료 산정 및 부과

①월보수액 통보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

②보험료 산정, 부과, 고지

(보험료 산정)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 보험료율
보험료 부과(매월 15~18일) 및 고지(매월 22일경)

③보험료 납부

매월 월별보험료 납부(매월 10일까지)
*매월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보험료 원천공제

부과 과정(예시) 7월 노무제공자 월보수 발생 → 8월 31일까지 월보수 신고 (7월분)
→ 9.15~18일경 (7월분) 보험료 산정, 부과 → 9.22일경 보험료 고지 (10.10.납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용산재도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작성·제출 가능

참고6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처

1 고용보험 적용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접속 및 사용 방식, 고용보험 신고 관련 문의, 사업장 성립, 피보험자격 취득, 고용보험료 산정 등 고용보험 가입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특고센터로 문의

서울 (서울, 강원도,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1층			
	대표번호	02-6946-0500			
	팩스번호	1부	0502-223-3102	3부	0502-223-1204
		2부	0502-223-1203	예술인 가입부	0502-223-3203
경인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제외))	주소	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삼산동, 엘림타워) 501호			
	대표번호	032-712-0500			
	팩스번호	1부	0502-451-1102	2부	0502-451-1103
부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초량동, 아모레퍼시픽) 10층			
	대표번호	051-790-0300			
	팩스번호	1부	0502-661-1102	2부	0502-661-1103
대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둔산동, KT&G) 7층			
	대표번호	042-718-0600			
	팩스번호	1부	0502-870-1102	2부	0502-870-1103

2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 등 고용보험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한 사항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문의
-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

2022년 8월 발행

2022년 8월 인쇄

발행 : 고용노동부

편집 : 고용서비스정책관실 전국민고용보험확대TF

(전화) 044-202-7927

(팩스) 0508-8230-1098

인쇄 : (주)대창시스템(02-2285-1479)